

제 2 부

주요 언론조정사례

제1장 정정보도문 게재 사례

정정보도문 게재 사례

정정보도 사례 01 2024경남조정15 정정청구

신청인 유형	지방자치단체
피신청인 매체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정정 및 반론보도)

보도자료에 제시된 통계 지표를 잘못 해석해 보도하여 특정 지자체가 피해를 입게 된바, 해당 지표에 대한 부가적 설명과 해당 지자체의 입장을 담아 정정 및 반론보도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

보도내용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시군구별 1인당 소득(1인당 GRDP)이 ○○시의 경우 25,217,000원으로서 경남 18개 시군 중에서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 1인당 소득은 A 시장 임기 중인 지난 2020년 처음으로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꼴찌로 추락했으며 2021년에도 가장 낮은 1인당 소득으로 나타나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1인당 소득과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명백히 다른 지표인데도 피신청인은 이를 구분하지 못했다면서 시군별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 지역내총생산 수치를 해당 시군 인구로 나눈 지표이기에 소득 및 생활수준 등과 직접 비교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유의사항을 보도자료에 포함해 안내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1년 기준 신청인 지자체의 지역내총생산은 도내 5위 이내인데도 피신청인은 도내에서 꼴찌라고 사실과 다르게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의 '1인당 총생산'은 2015년에도 최하위를 기록한 적이 있기에 A 시장 임기 중인 2020년 처음으로 도내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신청인은, 통계 지표에 대한 피신청인의 부정확한 보도로 인해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신청인의 시정과 시책에 대한 신뢰가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지역 주민의 평균소득을 나타내는 지표로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기에 1인당 지역내총생산 지수가 주민 소득을 표현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피신청인이 보도하게 된 근본 취지는 ○○시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이 A 시장 재임 기간에 도내 최하위로 떨어져 시민들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짚어서 행정당국이 시민들을 위해 더욱 분발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라며, 보도 내용에 사실관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바로잡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중재부는 '지역내총생산(GRDP)'과 '지역총소득(GRI)'은 통계적으로 다른 지표이고, 두 지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1인당 지역내총생산'을 '1인당 지역소득'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정정이 필요해 보이고, A 시장 임기 중에 처음으로 꼴찌를 했다는 부분도 사실관계를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중재부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하여 중재부 조율하에 양측이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행하는 것으로 합의에 이르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시의 1인당 소득(1인당 GRDP)가 경남 18개 시·군 중에서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시군구별 1인당 소득(1인당 GRDP)에서 ○○시 소득이 2,521만 7천 원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시의 1인당 소득은 경남 전체 18개 시·군 가운데 최하위 수치이다. ○○시 1인당 소득은 A 시장 임기 중인 지난 2020년 처음으로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꼴찌'로 추락했다. 그 이후 2021년에도 최하위를 기록해 2년 연속 경남 시군 중 가장 낮은 1인당 소득을 기록하고 있다. **[후략]**

조정성립사항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정정 및 반론보도] ○○시 1인당 소득(GRDP) 보도 관련

본문내용: 본지는 지난 4월 29일 「○○시 1인당 소득(GRDP) 경남 18개 시·군중 '꼴찌' 기록」 제목으로 2021년 ○○시 1인당 소득(GRDP)이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꼴찌'로 추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GRDP(지역내총생산)는 각 시·군 내에서 경제활동별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생산액)가 발생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고,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지역내총생산을 해당 시·군 인구나 나누는 것으로서 경제구역 내에서 주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거주자가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받은 소득의 합계 수치를 나타내는 지역총소득(GRI)과는 다르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시의 1인당 GRDP가 2015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바 있어 2020년에 처음으로 꼴찌를 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바로잡습니다.

제장

정정보도문 게재 사례

또한 ○○시는 “경상남도 자료에 따르면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을 시·군별 소득 및 생활 수준 등을 직접 비교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적합하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48시간 동안 고정하여 게재하며,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48시간 게재 이후에도 정정 및 반론 보도문이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서 계속 확인될 수 있도록 한다.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 하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 게재한다. 단 정정 및 반론보도문은 글씨체, 박스, 음영처리 등을 통해 원 조정대상보도와 구별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은 향후 GRDP에 관한 내용을 보도 시 ‘1인당 지역총생산’ 또는 ‘1인당 GRDP’로 언급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단, 계약에 의한 기사 공급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그 경우에도 네이버, 다음 포털의 뉴스섹션에 한함)에게도 조치사항을 전송한다.

정정보도 사례 02 2024서울조정2047·2048·2049 정정·반론·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방송사닷컴(인터넷뉴스서비스)
처리결과	조정성립(정정보도, 반론보도)

전교 부회장 당선이 취소된 초등생의 학부모가 해당 학교와 교육청 등에 무더기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 관련, 사실관계가 잘못된 부분은 지엽적이어서 통상적인 형식으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행하게 되면 독자들로 하여금 보도내용의 핵심이 잘못되었다고 인식하게 할 수 있어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분리하여 이행하기로 한 사례

보도내용

과거 자녀가 전교 임원 선거에서 당선 취소됐다는 이유로 고소·고발에 더해, 300여 건의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한 학부모 사례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최근에도 자녀의 전교 임원 선거와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가 동시다발로 일어나고 있다. ○○교육청은 이러한 정보공개 청구가 악성민원성으로 판단될 경우 법적 조치 등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초 ○○의 교육지원청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대다수 지원청에 접수된 특정 정보공개 청구에는 2021년부터 모든 초등학교의 전교 임원 선거에서 접수된 이의제기 건수 등 모두 여섯 가지의 요구가 포함됐다. 그런데, 이 청구를 한 청구인 B 씨는 지난해 손녀가 부회장에 당선된 후 취소되자 100건 이상의 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한 인물과 동일인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청구에 대해 C 교육감은 정보공개 청구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 건은 “갑질성”으로 보인다고, 구분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B 씨는 본인은 손주의 임원 선거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탄원을 보내 C 교육감 임기 안에 단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청이유

신청인1.(A)은 자녀가 전교 임원 선거에서 당선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고소와 고발 및 300여 건의 무더기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신청인2.(B)는 A의 모친으로 초등학교 임원 선거에서 당선 취소된 것은 손녀가 아닌 손자이고, 교육청 등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100건 이상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보도에서 거론된 ‘전국 초등학교의 임원 선거에서 접수된 이의제기 건수 등 6개 항목’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대부분 학교에서는 ‘부존재’로 회신했고, 특정 학교에서만 1개 항목에 대해 1건이 있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B는 본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언론사와도 인터뷰한 적이 없고, ‘C 교육감을 임기 기간 안에 단죄시켜야 한다’고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02 주요 언론조정사례 - 제1장 정정보도문 게재 사례

피신청인의 보도로 신청인들에 대한 악성댓글이 달리게 되고, 신청인들의 가족에 대한 비하·혐오 등 모욕적인 표현이 난무하고 있어 가족 모두가 정신적으로 큰 고통받고 있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와 신청인별로 2,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A가 학교를 상대로 29회에 걸쳐 정보공개 청구 300여 건, 고소·고발 7건, 행정심판 청구 8건을 제기했고,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국민신문고 민원 24건을 제기한 것을 확인한 만큼 다수의 민원을 제기한 바 없다는 A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피신청인은, 정보공개 청구가 100여 건이 되지 않는다는 B의 주장에 대해 9개의 교육지원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지원청 관할 초등학교 모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산하 초등학교 숫자를 토대로 100건 이상의 정보공개 청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청인 A와 B는 각각에 대해 잘못된 사실을 보도하였으므로 두 당사자를 별도 주체로 구분해서 각각에 해당하는 정정보도 등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는 피신청인과 통화한 적이 없었는데도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도가 됐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정정보도는 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피신청인은 B와 직접 통화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분을 명확하게 밝히고 인터뷰가 이루어졌다면서 관련 녹취자료를 제출하였다.

중재부는 인터뷰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간 개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해당 부분을 삭제할 것을 권고하고, 보도 주제와 크게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C 교육감 헌법재판소 탄원' 내용도 삭제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독자의 오해를 우려해 문구 삽입을 원한다면 반론으로 반영하겠으며, '손녀'가 아닌 '손자'인 부분은 정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피신청인은 정정 및 반론보도로 게재될 경우 독자들이 핵심적인 내용에 허위가 있는 걸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각각 분리하여 게재하는 방법을 제안했고, 신청인도 그 안을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지난해 자녀가 전교 부회장 선거에서 당선 취소됐다는 이유로 고소·고발에 더해, 300여 건의 무더기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한 학부모 사례가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죠.

최근에도 이처럼 임원선거와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가 동시다발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교육청은 악성민원성으로 판단될 경우, 법적 조치 등 강경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략]**
[리포트]

이달 초 ○○의 한 교육지원청에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모든 초등학교의 전교 임원선거에서 접수된 이익제기 건수, 긴급회의를 소집한

건수 등 모두 여섯 가지 요구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중략]**

이 같은 정보공개 청구는 ○○뿐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대다수 지원청에 접수됐습니다.

[중략]

그런데, 교육계에 따르면, 이번 정보공개 청구를 한 A씨의 행동은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의 손녀가 학교 임원 선거의 부회장 당선이 취소된 뒤 정보공개 청구 100건 이상을 제기한 인물과 동일인으로 전해졌습니다.

C 교육감은 정보공개 청구 제도가 필요하다면서도, 이른바 ‘갑질성 민원’과는 구분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C 교육감]

“(이번 건은) 갑질성 정보공개 청구로 보이는데 일단 이 부분이 학교에 부정적 결과를 나오지 않도록 차단하고 그 다음에 법적 검토가 끝나면 고발 조치 등의 후속 행위를 하고자 합니다.”

A씨는 피신청인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본인은 손주의 임원 선거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는 아니라고 부인했고,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보내 C 교육감 임기 기간 안에 단죄 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후략]

조정성립사항

정정보도문

보도제목: [정정보도] 〈악성 민원 수단 된 ‘정보공개 청구’…교육감들 “강력 대응”〉 관련

본문내용: 본 방송은 지난 5월 20일자 전체뉴스면에 〈악성 민원 수단 된 ‘정보공개 청구’…교육감들 “강력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 ‘손녀’가 아니라 ‘손자’임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반론보도] 〈악성 민원 수단 된 ‘정보공개 청구’…교육감들 “강력 대응”〉 관련

본문내용: 본 방송은 지난 5월 20일자 전체뉴스면에 〈악성 민원 수단 된 ‘정보공개 청구’…교육감들 “강력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자녀가 전교 부회장 선거에서 당선 취소됐다는 이유로 고소·고발 및 300여 건의 무더기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한 학부모 사례가 알려진 가운데, A씨가 지난해 자신의 손녀가 학교 임원선거의 부회장 당선이 취소된 뒤 100건 이상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이번에도 같은 목적으로 전국 대부분의 초등학교에 악성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이번 손자의 임원선거와 C 교육감에 대한 헌법재판소탄원은 무관하고, 100건 이상의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실이 없고, 이번에 요청한 정보공개청구가 처음이고, 필요에 의해 요청한 것이지

정정보도문 게재 사례

누구를 괴롭힐 목적이 아니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기사 첫 문장의 학부모는 “2023년 2월 자녀가 전교 부회장에 뽑혔는데, 선거 규칙 및 유의사항을 모두 준수하였음에도 공고 유예처분 후 공식 결정이 이루어지고, 학교로부터 당선 무효를 강요당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아울러 2023년 8월 기준으로 보도된 것과 달리 14건의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했다. 그리고 해당 자녀는 2023년 3월 재선거를 통해 당선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문 제목을 방송사 홈페이지 전체뉴스면 상단에 최초 게재시점부터 24시간 동안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각 정정보도문과 반론보도문 본문이 나타나도록 한다. 본문의 활자 및 크기는 조정대상보도와 동일하게 하며 24시간 후에도 기사 DB에 보관하여 계속 검색되도록 한다.
- 방송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각 조정대상보도 하단에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문 본문을 이어서 게재하고 계속 확인되도록 한다. 활자 및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과 동일하게 하며 박스 처리, 음영 처리 등으로 구분되도록 한다.
- 네이버,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도 조치사항을 전송한다.

정정보도 사례 03 2024광주조정45 정정청구

신청인 유형	일반기업체
피신청인 매체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취하(정정보도)

인조잔디 축구장에 쓰이는 자재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보도 관련, 피신청인의 적극적인 협의로 인터넷기사 열람차단 후 정정보도는 물론 신문 지면에도 정정보도가 게재된 사례

보도내용

○○에 건립 중인 체육연수원의 운동장 배수판에 들어가는 '블록형 자재'가 2026년부터 적용되는 국제축구연맹(FIFA)과 대한축구협회(KFA)의 '인조잔디 경기장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록형 배수판이 충격에 취약해 파손 가능성이 크고, 사용자의 부상 위험이 높으며, 접합면 누수로 인한 지반 침하 현상도 나타난다고 한다.

블록형 대신 충격흡수형이 대안으로 쓰이는 추세인데, 전국 594개 인조잔디 축구장 가운데 400개 축구장이 충격흡수 배수판을 쓰고, 블록형 배수판으로 시공된 축구장은 194곳에 불과하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블록형 배수판 제조사로서 피신청인이 보도를 통해 산업표준에 따른 인조잔디 시스템에 배수 자재에 대한 내용이 없고 배수판은 인조잔디 시스템 하부에 설치되는 것으로 평가대상이 아님에도 배수판 자재가 품질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한 점, 배수자재에 대해 압축강도나 충격 등 공식 기관의 시험을 거쳐 안정성이 입증되었음에도 블록형 배수판이 충격에 취약하다고 한 점, 전국 594개 인조잔디 축구장 중 435개소가 블록형 배수판으로 계약한 바 있음에도 194개소만이 블록형 배수판을 사용한다고 한 점 등을 짚으며 피신청인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회사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직접적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심리 개최 전 조정대상보도에 대해 열람차단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내용과 독자에 대해 사과하는 내용을 담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아울러 피신청인은 조정대상 기사가 게재되지 않았던 일반신문에도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를 게재하겠다고 약속하여 신청인은 심리 전에 신청을 취하하여 종결되었다. 피신청인은 약속한 바를 모두 이행하였다.

정정보도문 게재 사례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게재보도문

정정보도문

[바로잡습니다] △△일보 3월 13일자 14면 '○○ 체육인재개발원 종합운동장 설계 부적합 논란 기사'와 관련 인조잔디 경기장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자재로 설계했다는 내용은 전문가들의 사실 확인 결과, 블록형(플라스틱)배수판은 인조잔디 시스템 하부에 설치되는 현장포설형 배수자재로 인조잔디 경기장 품질기준에 적용되지 않는 배수자재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인조잔디 경기장 품질기준은 인조잔디 시스템에 한정하고 있는 내용이었다는 점을 바로잡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더욱 충실하고 정확한 보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정보도 사례 04 2024서울조정2092·2093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기타 일반단체
피신청인 매체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정정 및 반론보도, 기사수정, 손해배상 30만 원)

단체장이 명절 선물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횡령을 하였고, 공사비를 과대 산정해 착복하였으며, 발간사업비를 과대계상하여 집행하는 등 각종 비리 의혹이 있다는 보도와 관련, 피신청인이 제보의 진위를 충분히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되어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고, 나아가 기사수정과 손해배상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법무부 산하 협의회 A 회장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명절선물로 모 백화점 매장에서 홍삼 세트를 구매했는데, 2023년에는 자신이 몸 담고 있는 회사의 법인카드로 선물을 구매한 후 청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여 해당 금액을 자신의 통장으로 받아 횡령이 의심된다.

A 회장은 협의회 사업을 과대 반영한 의혹도 있다. 역사관 공사와 관련해 1천만 원 내외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것도 모자라 4천여만 원으로 부풀려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 부풀린 공사 이익금의 향방이 궁금하다.

협의회가 “45년사”를 발간하면서 500부로 부수를 확대하고 2,500만 원을 사용해 2배 이상 과대계상이라는 논란이 있으며, 종교계를 장악하기 위해 종교계 언론사 사장을 겸임할 수 없다는 규정을 총회 자료집에서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은 협의회장 자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불교방송 사장이 되기 위함으로 보인다.

또한 대학병원에 그림을 기부하면서 그림값을 부풀려 기부금을 확정받고, 모 골프용지 사기 사건 등에도 연루된 의혹이 제보로 밝혀진 바 있다.

아울러 A 회장은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 B 씨를 운영실장으로 임명하였는데 원칙대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회원들에게 연 2회 지급하는 명절 선물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한 판매점을 찾았으나 예산집행 상 외상거래가 제한되어 협의회장의 개인 카드로 선결제 후 차후에 대금을 돌려받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역사관 공사의 경우 임원 회의를 통해 승인된 것이었으며 업체가 발급한 견적서 대로 공사가 진행됐고 예산이 부족한 바닥 공사를 협의회장이 협찬을 하여 마무리가 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신청인은 “40년사”의 재고수량이 거의 소진되어 5년의 역사를 추가해 “45년사”를 발간할 수밖에

02
주요 언론조정사례 - 제1장 정정보도문 게재 사례

없었는데 정기총회의 승인을 득하고 시장 평균 가격에 부합한 업체와 계약을 하여 진행한 만큼 발간 이유나 과정에 아무런 흠결이 없다고 반박했다.

신청인 협의회장의 언론사 사장 견직에 대해 피신청인이 지적했으나 전국연합회 및 협의회 규정상 견직 불가 규정은 없으며, 기사에서 제시한 운영규칙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청인 협의회장이 병원에 기부한 미술품 관련하여 기부액을 부풀렸다는 주장과 골프용지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 없이 음해를 위해 제기하는 의혹에 불과하다면서 피신청인의 보도로 인해 신청인 협의회 및 회장, 소속 회원들의 명예가 훼손된 데 대하여 정정보도와 함께 6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심리 과정에서 피신청인은 녹취록, 공문, 3개년 간의 정기총회 결과 책자 등 제보 외에도 충분한 자료 검토를 거쳤으며, 신청인 협의회 임원과 사무처장, 사회단체 등 관련자들에 대한 취재도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피신청인은 다른 제보들도 있지만 신청인 측의 주장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서는 추가로 취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중재부에 제출한 제보 자료는 대부분 허위사실에 기초한 것인데 피신청인은 이에 대해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반박자료를 제출했다.

중재부는 사실관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곤란하지만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에 의존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를 게재할 것을 제안했다.

신청인 측은 악의적인 제보에 근거한 보도로 단체와 대표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기에 소액이라도 손해배상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중재부는 피신청인의 불출석으로 2차까지 진행된 심리에 신청인은 원거리에서 꾸준히 참석했던 상황 등을 고려해 상징적인 액수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중재부의 제안을 받아들여 정정 및 반론보도의 이행, 조정대상기사 제목 수정, 그리고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법무부 산하 (생략)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 A 회장의 의혹들이 가득하다. **[중략]** 제보에 의하면 A 회장은

1. 22년 추석, 23년 구정과 추석 그리고 24년 구정까지 모두 △△△백화점 □□□(대표 ◇◇◇ 010-****-****)에서 홍삼 선물셋트를 발주하였다.

한 번의 경우만 살펴봐도 2023년 추석을 앞두고 ☆☆건설 관련 법인카드로 상품을 구매한 후 그 청구서를 협의회에 청구(제시)하여 자신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받는 방식으로 법인에 배임하고 그

돈을 자신(개인)이 사용하는 통장으로 입금하는 형태로 횡령하는 사례들이다.

2. 협의회 사업들을 과대 반영한 사례로 인한 의혹 역시 수두룩하다.

역사관 공사 관련 의혹 역시 협의회는 이 공사의 견적서와 설계도를 본보에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제보에 의하면 1천만 원 내·외 정도의 공사를 수의계약 형태로 3배 이상인 4천여만 원으로 부풀려진 금액으로 협의회 회비를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중략]**

3. 이외에도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50년사”라면 모르지만, 자신의 임기 중에 발간 기간을 어기면서까지 A 회장은 “45년사” 발간에 필요 이상인 500부로 확대하여 기록물인 이런 책자에 2천5백만 원을 사용하였다는 것은 어느 곳과 비교하여도 2배 이상의 과대계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4. 더 무서운 제보는 A가 협의회 회장을 하면서 돈이 되는 ∇∇계를 휘두르려는 목적으로 의심되는 행위로서 언론사(○○∇∇방송) 사장을 견할 수 없다는 규정을 감추고자 22년까지는 분명히 확인되는 “법무부 (생략) ○○지역협의회” 규정 제7조 ⑥항과 제8조 ⑦항을 정기총회 홍보물에서 임의로 규정을 삭제하는 악의적인 사문서위조 행위까지 서슴없이 저지르면서 협의회장 자리를 유지하거나 ○○∇∇방송 사장이 되었다는 제보이다.

이외에도 A 회장은 ◎◎◎병원 2층에 비치된 그림과 기부자 명단을 보면 자신의 회사에서 공사한 공사비와 기부한 그림값을 최대한 임의로 부풀려서 기부금을 확정받았고 이는 국민이 보면 짙은 화장을 한 기부 천사처럼 보이게 하여 국민 전체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해왔다는 제보와 투자라고 주장하여 무혐의와 무죄로 끝난 듯 보이는 사건들이지만 <<골프용지 사기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는 본보가 현재 탐사 취재 중이다. **[중략]**

운영처장으로 불리는 운영실장의 대리자 B는 취재통화에서 2024년 2월 1일 회장으로부터 자격 요건도 안된 상태로 직권 임명되어 대리업무 중일 뿐이어서 규정에서 정한 감사 2명과 통장관리를 하는 운영실장, 회계지출을 결의하는 회장이 서로 견제되는 회계감사 원칙이 지켜지는지는 의문이다. **[후략]**

※ 위원회 조정을 통해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와 기사수정, 손해배상 30만 원 지급이 이행되었는데, 이후 피신청인이 본 조정대상보도를 열람차단하였음

조정성립사항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정정 및 반론보도문] <법무부가 ‘범죄 예방하고자 만든 기구에서 범죄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라는 의혹이다.> 관련

본문내용: 본 매체는 지난 2024년 6월 26일자 특종, 기획면에 <법무부가 ‘범죄 예방하고자 만든 기구에서 범죄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라는 의혹이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A 회장이 회원들 선물구매 시 ☆☆건설 법인카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언론사 사장은 협의회 회장을 견임할 수 없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이를 임의로 삭제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제장

정정보도문 게재 사례

그리고 협의회 측은 “역사관 개선공사와 45년사 발간에 과대계상하여 협의회 회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실이 없고, 협의회 회계 지출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A 회장이 자격요건이 안된 상태로 운영처장을 직권으로 임명하고, ◎◎◎병원 그림 기부로 공사비를 부풀려 확정받은 사실이 없으며 <<골프용지 사기 사건>>은 관련이 없다.” 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특종, 기획기사면 기사목록 상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24시간 고정하여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이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 본문 하단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고 계속 확인되도록 한다. 단, 상자, 음영, 볼드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원보도와 구분되도록 한다.
- 네이버,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하여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인터넷 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조치사항을 전송한다.

기사수정

<조정대상보도 제목 수정>

(수정 전) 법무부가 “범죄 예방하고자 만든 기구에서 범죄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라는 의혹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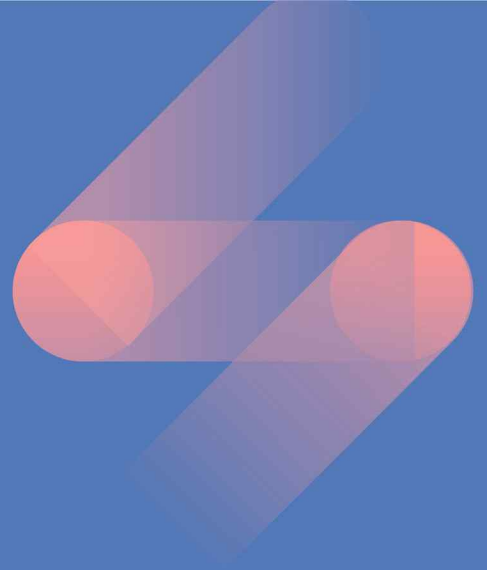
(수정 후) 법무부가 ‘범죄 예방하고자 만든 기구에서 범죄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라는 의혹이다.

손해배상

- 피신청인은 2024. 11. 11.(월)까지 손해배상금으로 금 300,000원을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한다. 피신청인이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완납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024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



02

제 2 부

주요 언론조정사례

제2장 반론보도문 게재 사례

반론보도문 게재 사례

반론보도 사례 01 2024충북조정61 정정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반론보도)

지자체 체육센터 수탁운영사가 근로기준법 위반, 보조금 횡령의 혐의로 고용노동청과 경찰의 조사를 받았으나 모두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는 보도와 관련, 국민권익위에서는 수탁운영사의 보조금 횡령 건에 대해 문제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이첩한 사실을 포함해서 반론보도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

보도내용

○○군 체육센터 운영 수탁사인 A 업체가 그동안 제기된 불법 의혹을 해소했다. 지난해 11월 센터 소속 강사였던 B 씨는 이 업체가 임금명세서 상 레슨비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업체가 임금명세서에 레슨비를 기재할 의무가 없다며 내사를 종결했다.

B 씨는 초등생 대상 의무교육인 '생존수영'의 강습료도 센터에 갈취당했다며 A 업체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바 있는데, 사건을 담당할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군도 자체 감사를 시행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신청이유

공익제보자인 신청인은 국민권익위원회가 A 업체의 생존수영 관련 보조금 횡령 사실을 확인하여 경찰청과 교육청에 사건을 이첩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군 특별 감사 결과 주의 4건, 시정 1건, 기타 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다면서 A 업체가 모두 무혐의로 결론났다는 피신청인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보도로 인해 ○○군에서 실시한 2024년 체육센터 위탁업체 심의에서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업체가 재선정되었고, 그로 인해 내부고발자인 자신은 복직의 기회를 잃게 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제보를 받은 후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조사 결과까지 확인하고 보도하였으며, 보도의

요지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사기 혐의 인정 여부인데 관계기관을 통해 모두 혐의없음으로 처리된 것을 확인하였고, 신청인이 언급한 지자체 감사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는 강제성이 없어 불법 여부를 가리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사실확인을 충분히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제보자인 자신에 대해서는 제대로 취재하지도 않았으며 공익제보 이후 A 업체가 또다시 수탁사로 되어 생업유지가 어려워졌다면서 피신청인이 누락한 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희망했다.

중재부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해 전혀 취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례적이라고 지적하고, 국가권익위원회가 수사당국 등에 이첩한 사실과 해당 수탁사가 모든 혐의를 벗지는 못했다는 사실을 담아 반론보도할 것을 권고했다.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를 보도할 당시에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사건 이첩이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알 수 없었다면서 보도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는 점을 감안해 중재부가 권고한 반론보도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인도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스포츠시설 운영업체인 △△△△가 그동안 제기된 ‘불법 업체’ 의혹을 모두 털어냈다.

26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국민체육센터 강사가 이 시설 수탁업체였던 △△△△(주)를 상대로 낸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내사 종결했다.

지난해 11월 센터 소속 강사였던 B 씨는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 중인 이 업체를 상대로 임금명세서에 레슨비 미기재 이유로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담당 근로감독관은 레슨비까지 임금명세서에 기재할 의무는 없다고 봤다.

임금의 의미를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정의하면서 레슨비는 강사와의 협의를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고정적이지 않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인원도 한 명부터 여러 명까지 레슨을 받을 수 있는 불확정적인 특징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같은 달 B 씨는 또 초등생들이 의무적으로 받는 교육인 ‘생존수영’에 대해서도 강습료를 센터와 배분함에 있어 갈취당했다며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냈다.

이번에도 이 사건을 조사한 담당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이와 관련, △△△△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강습료 배분은 체육센터와 강사 간의 합의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라고 답했다.

군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최근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이날 밝혔다. **[후략]**

조정성립사항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반론보도] ‘○○국민체육센터 수탁’ △△△△△, 불법 혐의 모두 벗어 관련

본문내용: 본 신문은 지난 4월 26일 ○○국민체육센터 수탁업체인 △△△△△가 체육센터 소속 강사의 제보로 불거진 각종 불법 의혹을 모두 벗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제보자 측은 “국민권익위에서 해당 업체에 관하여 신고된 일부 내용을 경찰청과 충북교육청으로 이첩하여 계속 조사 중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피신청인 홈페이지 사회면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반론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피신청인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 본문 하단에 반론보도문 본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계속 확인되도록 한다. 단, 상자, 음영, 볼드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원보도와 구분되도록 한다.

반론보도 사례 02 2024경남조정26·27/28·29 각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기초광역자치단체장
피신청인 매체유형	주간신문,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반론보도)

군수의 금품 수수 의혹 보도와 관련, 반론보도를 지면과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인터넷신문 카카오톡 채널 구독자에게도 반론보도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

보도내용

○○군수(A)가 지역 업체로부터 2021년 5천만 원, 2022년 2억 5천만 원의 선거비용을 받아 해당 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준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예컨대 선거 운동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군수의 동창이 대표인 업체는 군으로부터 수의계약을 집중적으로 따내는 등 가족 전체가 혜택을 누렸다는 논란이 있다.

또 2022년 선거에서 군수를 도왔던 B 씨는 군수 자녀의 결혼식에 200만 원의 축의금을 내는 등 로비 의혹 등으로 고소당하기도 했는데, B 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군으로부터 1년여간 1억여 원의 공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승진에 대한 보답으로 군수에게 불법 후원금을 기부한 공무원도 있는가 하면, 모 공무원이 진급을 위해 군수에게 5천만 원을 전달했다가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되돌려 받은 후, 5천만 원을 더해 1억 원을 전달했음에도 승진에 실패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수차례나 허위 보도를 반복적으로 양산하고, 카카오톡으로 연결된 1,000~2,000명의 군민에게 해당 기사를 발송하여 신청인 자신과 가족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비난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은 금품수수 의혹을 구체적인 사실인 것처럼 적시하여 자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피신청인 보도에 대하여 열람차단 및 정정보도와 총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신청인은 심리 중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신청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정정보도청구만을 논하는 형태로 조정이 진행됨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의 목적은 부정행위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것이고, 기사에서 거론된 소문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02
주요 언론조정사례 - 제2장 반론보도문 게재 사례

밝혔다. 아울러, 카카오톡으로 연결된 피신청인의 구독자는 150명 남짓인데 1,000~2,000명의 군민에게 발송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에 대해 충분히 취재하지도 않고 수차례에 걸쳐 악의적으로 보도한 것은 군민들의 알권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서 피신청인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재부는 선출직 공직자의 금품수수 의혹은 당사자는 물론이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여파가 큰 만큼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치고 당사자 입장도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고 원 보도에 신청인의 주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에 반론보도는 이행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피신청인은 사실 관계가 불분명한 부분을 삭제하고 반론보도를 이행할 의향은 있지만, 손해배상 등에 대한 부제소가 담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신청인은 손해배상을 제외하는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중재부에 제출하였다.

2차 심리에서 중재부는 양 당사자에게 서로 협의한 반론보도를 게재하되 부제소 조항은 제외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제시하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①·② **[전략]** ○○의 경우는 어떨까, 군수와 업자, 공무원들 사이의 크고 작은 비리와 특혜에 대한 의혹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역의 한 업체는 동종업계로부터 2021년 군수 선거에 5천만 원의 선거비용을 대고 군청으로부터 무더기 일감을 받았다는 의심을 샀다. 이 업체는 2022년 선거에서는 군수에게 2억 5천만 원을 대고 현재도 ○○군의 일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는 풍문이 널리 퍼져 있다.

군수와 고등학교 동기인 부부는 군수 선거에 적극 나선 공로로 전 가족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선거 후, 군수의 동기가 대표로 취임한 건설업체에는 군으로부터 수의계약이 집중되었고, 배우자는 관변단체의 사무국장을 맡기도 했다. 또한 부부의 아들은 청년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군으로부터 2,500만 원을 지원받아 주변으로부터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다. **[중략]**

올해 초에는 2022년 선거에서 군수를 도왔던 B 씨에 대한 고소장이 ○○경찰서에 접수되었다. 이 고소장에는 B 씨가 2023년 조경회사를 차리고 군수 아들의 결혼식에 200만 원의 축의금을 내는 등의 로비를 벌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로비나 청탁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 업체가 ○○군으로부터 1년여간 1억여 원의 공사를 받았던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 **[중략]**

승진을 시켜줘서 고맙다며 불법으로 군수 후보에게 후원금을 기부했던 공무원은 사실을 묻는 기자에게 “뭘로 엮으려고 그러느냐?”며 당당하기까지 하다. 군수선거에서 중요 직책을 맡았던 전직 공무원은 새로 만든 축제를 준비하는 단체의 장을 맡아 ‘위인설관’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후략]**

③·④ **[전략]** 2년여 동안 인사철이면 빠지지 않던 소문도 다시 들려온다. 군청에 근무한다는 만년 팀장(0급) C 씨의 과장진급에 대해서다. 과장진급을 간절히 원했던 C 씨는 A 군수에게 5천만원을 전달했지만 적다면서 되돌려 받았다. 기왕에 나선 터, C 씨는 여기에 다시 5천만원을 더해 1억원을 전달하고 매번 인사철마다 자신의 승진을 기다렸지만 2년 동안 승진에는 실패했다. **[후략]**

※ 위원회 조정을 통해 지면과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반론보도가 게재되었는데, 이후 피신청인이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 ④를 열람차단하였음

조정성립사항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반론보도] <○○군수 선거 유착 의혹 및 인사 잡음> 보도 관련

본문내용: 본지는 지난 6월 23일(지면 6월 28일자 2면) 및 6월 30일(지면 6월 28일자 3면) 「금권선거와 ○○, 끊이지 않는 유착의혹」, 「○○군 인사, 더 이상 잡음 없어야」 제목으로 A 군수의 선거 유착 의혹 등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A 군수는 “지역 업체로부터 선거비용을 받거나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사실이 없으며, 선거 시기 일부 공무원이 관련 규정을 모르고 후원금을 기부한 것을 확인해 반환 조치했다”고 밝히며 “결과적으로 기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승진 대가로 불법 후원금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군청에 근무하는 모 팀장이 진급을 위해 금품을 전달했다는 보도 역시 사실무근이며, 진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수로서는 치명적인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해 매우 유감이다”라고 전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지면신문 2면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보도 ①의 부제목과 같은 크기로, 본문은 조정대상보도의 본문활자 크기와 같은 크기로 게재한다.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반론보도문을 48시간 동안 고정하여 게재하며,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48시간 게재 이후에도 반론보도문이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서 계속 확인될 수 있도록 한다.
- 인터넷신문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 2건 하단에 반론보도문을 이어 게재한다. 단 반론보도문은 글씨체, 박스, 음영처리 등을 통해 원 조정대상보도와 구별되도록 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단, 계약에 의한 기사 공급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그 경우에도 네이버, 다음 포털의 뉴스섹션에 한함)에게도 조치사항을 전송한다.
- 인터넷신문 카카오톡 채널 구독자에게 반론보도문을 전송한다.

반론보도 사례 03 2024전북조정61/62 각 정정청구

신청인 유형	협회
피신청인 매체유형	방송, 방송사닷컴(인터넷뉴스서비스)
처리결과	조정성립(반론보도)

공공체육시설을 위탁 운영한 민간체육단체가 동호인들로부터 납부받은 시설 이용료를 협회 운영기금으로 임의 사용하고 회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는 회원의 요청에 응하지도 않았으며, ○○시 감사에서 협회 수익금 유용에 대해 환수 처분을 받았음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원 보도와 다른 시간대 뉴스프로그램을 통해 반론보도가 이루어진 사례

보도내용

①·② 모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시 △△△협회가 동호인들로부터 걷은 시설 사용료를 멋대로 유용하면서 회계자료를 요구하는 회원에게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지자체 감사 결과 환수 처분을 받은 5천여만 원도 납부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③·④ 공공 체육시설 수익금을 시설물 유지에만 써야 하지만 협회 운영자금으로 유용하다 감사에 적발돼 환수 처분을 받은 ○○시 △△△협회가 시에 환수금을 납부할 예정이다. 협회는 다섯 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할 의사를 밝혔다.

신청이유

신청인 협회는 정산 내역 미공개 관련 보도에 대해 매년 이사회 및 정기 대의원회의 때 각 클럽 회장과 감사, 임원들에게 정산보고를 했고, 일반 동호인들은 각 클럽 대표자를 통해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외부로의 자료 반출은 허락되지 않으나 협회 사무실에 방문해 언제든지 정산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은 환수 처분된 5천8백여만 원에 대해 2023년 12월 초 지자체와 협의하여 5회 분납하기로 이미 결정되었던 것인데도 마치 피신청인 보도 ①(2월 1일)이 이루어진 후 신청인 측이 급히 환수를 결정한 것처럼 왜곡하여 보도 ③(2월 2일)을 방송하여 신청인 협회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은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지자체 환수 조치에 대한 신청인의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된 2023년 11월 이후에도 신청인 협회가 납부를 보류한 바 있고, 지자체가 재차 납부를 요청하자 5회 분납하겠다는 계획을 밝혀놓고 2024년 1월 또다시 납부를 유예하겠다고 해 혼란을 일으킨 바 있다면서 신청인 측도

취재과정에서 이를 인정해 ①·②를 보도했고, 보도 다음날 신청인 측이 환수금 납부 절차를 밟겠다고 해 그 사실을 알리는 ③·④를 보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신청인은 협회 회원이 수차례에 걸쳐 회계자료 공개를 요청했음에도 클럽 임원은 ‘그걸 왜 보려 하느냐’라며 자료 공개를 거부하거나, 지자체가 감사를 진행 중이라 자료 유출이 불가능하다며 공개를 거부했다가 감사 종료 후에야 공무원 입회하에 형식적인 열람만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중재부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와 심리과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실제적 진실에 부합한다고 확신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보이고 피신청인의 보도 또한 사실관계 확인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반론보도를 통해 신청인의 입장을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피신청인은 반론보도문이라면 신청인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아침 시간대 뉴스프로그램을 통해 방송할 의향이 있다고 했으며, 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①·②

◀ 앵 커 ▶

○○시가 시설이 좋기로 유명한 공공 △△△장을 지난 10년간 민간단체에게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요, 운영단체가 시설 이용료를 멋대로 사용하고, 회원들에게 회계 정보도 제공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5천여만 원을 환수하기로 한 지자체 감사 결과도 부정하는 배짱을 부리고 있어 어쩌다 주객이 전도됐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략]**

◀ 리포트 ▶ **[중략]**

지난 2022년까지 ○○시가 △△△협회에 위탁한 사업, 동호인들로부터 매월 10만 원을 사용료로 걷었습니다.

그런데 1천만 원에 달하는 사용료 수입을 시설 관리와 상관없는 협회 운영기금으로 8차례에 걸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중략]**

2014년부터 재작년까지 지속된 협약서에 따라 사용료는 공원 시설물을 유지하는 목적으로만 써야 하지만, 협회가 마음대로 쓴 겁니다.

간부급 회원에게만 회계장부를 보여주고, 일반 회원에게는 사용료 이용 내역을 공개하지도 않아 낱감이 아니냐는 비판이 잇달았습니다.

지난해 뒤늦게 진행된 ○○시 감사에서 수익금을 협회 운영 자금으로 정산도 없이 사용하는 등 5천8백여만 원 상당의 유용 실태가 확인됐습니다.

제2장

반론보도문 게재 사례

그동안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민원인의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물의를 빚은 공무원 12명도 징계와 경고 등 철퇴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처분이 확정된 지 8개월이 지나도록 협회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애초 분할 납부를 약속했다가 협약에 환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돈을 내지 못하겠다고 배짱을 부리는 것, 그동안 ○○시에 회계자료를 제출해왔지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왜 감사에서 문제가 지적된 것이냐며 감사 결과마저도 부정하는 겁니다.

[A / ○○시 △△△협회 사무국장]

“회계나 행정감사에서는 다 통과가 돼서 넘어온 사안인데 왜 갑자기 시에서는 다르게 보냐.” [후략]

③·④ 공공 △△△장 수익금을 협회 운영 자금으로 유용해 감사를 받은 민간단체가 지자체에 환수금을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시 △△△협회는 ○○시로부터 환수조치를 명령받은 5천8백여 만 원 상당의 유용금을 오는 8일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하겠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협회는 2014년부터 재작년까지 지속된 위탁 운영 협약에 따라 ○○중앙체육공원 수익금을 시설물 유지에만 써야 하지만 협회 운영 자금으로 쓴 사실이 지난해 5월 감사에서 적발된 바 있습니다.

조정성립사항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협회, “회계정보 알 수 있다.”

본문내용: 지난 2월 1일자 □□□□□ 뉴스데스크 “힘 좋은 △△△협회? 감사 결과에도 배짱” 및 2월 2일자 5◇◇◇뉴스 “○○△△△협회, ‘환수금 5천 8백만원 납부하겠다.’라는 보도와 관련해, △△△협회측은 “일반 회원들도 협회 임원 등을 통하여 회계정보를 알 수 있다. 또한 환수금액이 많아 분할 납부하는 방법을 지자체와 협의하여 환수에 응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2024년 3월 12일까지 평일 중에 <□□□□□> 뉴스투데이에 반론보도문을 방송한다. 단 진행자의 멘트는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고,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한다.

반론보도 사례 04 2024제주조정1/2 각 반론청구

신청인 유형	고위공무원
피신청인 매체유형	방송, 방송사닷컴(인터넷뉴스서비스)
처리결과	조정성립(반론보도)

고위공직자인 신청인의 품위 손상 및 업무 태만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 관련, 신청인의 반론이 자세히 반영된 기자회견을 보도한 기사의 URL을 원 조정대상보도의 하단에 연결한 사례

보도내용

부산 남포동에서 ○○도 정무부지사 A가 여성과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되어 논란이다. A는 자신을 알아본 기자에게 출장(전시회)으로 부산에 방문했다고 하였으나, 공식 일정에는 그러한 일정이 없었다.

이날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 직전이자, A 부지사가 의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해외 출장을 가기 직전 주말이었다. 당시 의회에서는 A 부지사가 예산 협의도 없이 출장을 떠나 비판이 이는 중이었다.

A 부지사는 급박한 예산 정국 속 부산 일정에 대해 ‘개인 일정’이 왜 문제냐며 반문했고, 함께 있던 여성의 신분에 대해 말을 비꼴다가 보름 후에는 해당 여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품위손상의 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 정무부지사로서 책임감이 부족해 보인다는 의원들의 지적에는 ‘어떤 정무부지사가 의회와 예산 협의하러 다니냐’며, ‘초선의원들이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반박했는데, 전직 부지사들은 ‘예산 심사에 대비해 휴일에도 대기’하거나, ‘의원들에게 사업별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전술한 예결특위 본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A는 자신의 소관 업무인 농수축경제위원회 예비 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A는 당일 오전 11시에는 마이스산업대전에, 오후 2시에는 한 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참석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청 내부 일정을 제외하고, 지난해 A 정무부지사의 주요 일정은 모두 313건인데 건수만 보면 민선 7기 도정 2년 차 정무부지사보다 2배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일정의 성격을 살펴본 결과, 다른 읍은 지역색이 열린 행사들이 대다수였으나 A 정무부지사의 고향인 △△읍 관련 일정 12건은 읍민 체육대회나 동문의 날 등 지역 행사가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부산으로 ‘출장’을 간 것이라고 명확히 답변한 바가 없고 ‘어떤 정무부지사가 의회와 예산협의를 하느냐’라는 발언의 의미 역시 ‘구체적인 예산협의를 실·국장이 1차로 진행하고,

정무부지사의 협의나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2차로 담당하는 것이라는 의미였다고 주장했다. 또 피신청인은 전직 부지사들의 발언을 근거로 신청인의 행위를 비판하는 보도를 했으나, 이는 부지사별 업무방식의 차이일 뿐으로 신청인은 업무를 태만하게 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채 공휴일에 여성을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품위유지의 의무를 어긴 것으로 보도함으로써 신청인은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성과 정치인으로서의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어 향후 활동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한 보도 이전에도, 꾸준히 신청인의 정무부지사 역할 수행에 관한 의문이 제기됐으며, 이 사건 기사가 다루고자 한 것은 고위공무원인 신청인의 업무 태도의 적절성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신청인이 지속적으로 신청인에게 접촉해 의견을 들으려 했으나, 신청인이 제대로 된 반론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 사정이 이렇함에도 조정대상보도(①) 이후 신청인이 자신의 입장을 밝힌 기자회견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자신의 공식 입장이 후속보도를 통해 반영되기는 했으나, 원 보도만을 보는 독자도 있기 때문에 원 보도에 반론이 게재되기를 원했다.

중재부 또한 후속보도가 존재하나, 그와 별개로 조정대상보도(②)에는 신청인의 반론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별도의 반론보도를 게재할 것을 권유했다.

이에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①)에는 신청인의 공식 입장이 담긴 후속보도를 링크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해당 제안을 포함하여 작성한 중재부의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수용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① [전략] [리포트]

지난해 11월 말, 부산 남포동의 밤거리입니다.

식당과 노점상들 사이로 중년의 남성이 보입니다.

A ○○도 정무부지사입니다.

한 여성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기대 걷는가 하면, 여성이 A 부지사의 팔짱을 끼고 한참을 걷다 한 극장 건물로 들어갑니다. **[중략]**

우연히 A 정무부지사를 보게 된 □□□ 취재진은 고위공무원인 점을 고려해 확인차 인사를 건넸습니다.

[A/○○도 정무부지사/지난해 11월 25일 : "(부산엔) 어떻게 오셨어요?) 나, 일 보러왔어요.

(출장이세요?) 네, 네. (무슨 일로요?) 전시회요.”]

그런데 취재결과 A 부지사의 공식 일정에는 출장도, 전시회도 없었습니다.

특히, 이날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심사 시작 전이자, A 부지사가 의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해외 출장 가기 직전 주말입니다.

같은 시각 ○○도에선 긴급재정 속 7조 2천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심사를 위해 ○○도와 도의회 모두 비상이었습니다. **[중략]**

당시 의회에선 A 부지사에 대해 해외 출장 전 주말과 휴일 이틀이 있었는데도, 예산 협의도 없이 떠났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중략]**

취재진은 A 부지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두 차례 집무실을 찾았습니다.

예산 정국 부산 일정에 대해 A 부지사는 “개인 일정인데 뭐가 문제냐”며 반문했고, 당시 같이 있던 여성에 대해선 처음엔 부산에서 만난 사람이라고 했다가, 사촌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명확한 답을 듣기 위해 보름 뒤 다시 방문한 자리에선 해당 여성에 대해 “노코멘트 하겠다”고 했고, “팔짱을 끼거나 품위 손상의 행위는 없었다”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정무부지사로서 의회와의 예산 협의 등 책임감 있는 모습이 부족했다’는 의원들의 지적엔, “어떤 정무부지사가 의회와 예산 협의를 하러 다니냐”며 “초선의원들이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새해 예산의 최종 조율도 본인이 마지막에 다 한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중략]**

한 전직 부지사는 “예산 심사는 비상시기로 주말 휴일 할 것 없이 의회에서 부르면 바로 가도록 준비하는 건 기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전직 부지사는 “예결위 의원들을 일일이 찾아가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필요성을 설명하며 민생예산을 챙겼다”고 말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후략]**

② [전략] [리포트]

해외 출장을 이유로 새해 예산안을 다루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불출석한 A ○○도 정무부지사.

도의회 연간 의사일정은 매해 연말 ○○도와 협의해 결정하는데, 예산안 본심사에 앞서 열린 정무부지사 소관 업무 분야인 농수축경제위원회 예비 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중략]**

당일 A 정무부지사의 주요 일정을 확인해봤습니다.

오전 11시에는 마이스산업대전예, 오후 2시에는 한 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참석했습니다.

□□□는 ○○도 홈페이지에 공개된 지난해 A 정무부지사의 주요 일정들을 분석해봤습니다.

회의와 보고 등 ○○도청 내부 일정을 제외한 도내 일정은 모두 313건.

건수만 보면, 민선 7기 도정 2년차 때 정무부지사보다 2배 가량 많습니다. **[중략]**

‘대회’라는 단어가 포함된 일정을 보면 도민체육대회처럼 큰 행사도 있지만, 동지역 어르신 체육대회나 읍면 향우회 성격 단체의 풋살대회 일정도 나옵니다.

주요 일정을 지역으로도 구분해봤습니다.

제2장

반론보도문 게재 사례

도내 일정 313건 가운데 동지역이 243건, 읍면이 7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략]**
동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행사가 많은 도의회나 교육청, 호텔 등이 밀집한 ◇동이 가장 많았고 ○○국제컨벤션센터가 있는 ☆☆동이 뒤를 이었습니다.
읍면은 ▽▽읍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 △△이 각각 12건이었습니다.
◎◎읍은 ○○<<축제처럼 지역색이 열린 행사들이 대다수였지만, A 부지사의 고향인 △△은 읍민 체육대회나 동문의 날 등 지역 행사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중략]**

조정성립사항

반론보도문 ① (조정대상보도 ① 관련)

보도제목: [알립니다] 이 기사에 대한 A 전 정무부지사의 반론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론보도문 ② (조정대상보도 ② 관련)

보도제목: [반론보도] <농수축위 예산 심사때도 불출석...“행사 때문?”> 관련

본문내용: 위 보도와 관련해 □□□ 취재진은 보도 전 A 전 정무부지사의 반론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A 전 부지사는 보도 이후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안이 있거나 의회의 출석 요청이 없는 한 도의회 상임위 예비심사에는 정무부지사가 출석하지 않는데, 당일에는 특별한 사안도 아니었고 의회의 출석 요청도 없어 참석할 이유나 필요가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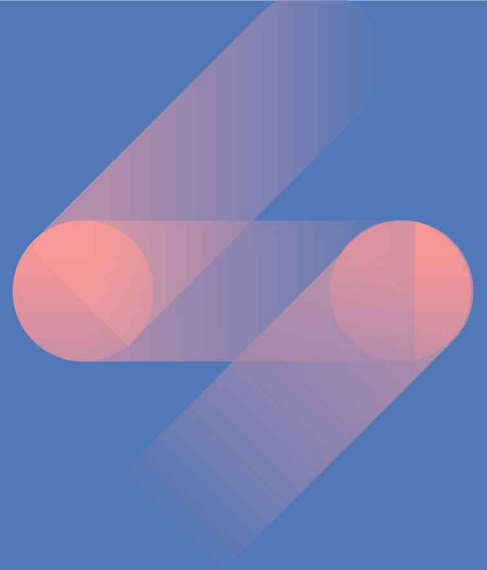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방송사 홈페이지 뉴스>○○면에 게시된 각 조정대상보도 ①, ②의 하단에 반론보도문 ①, ②를 각 게재하되, 반론보도문 ①은 원기사 하단에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표시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신청인의 공식입장이 반영된 피신청인의 2024. 1. 10.자 보도가 나타나는 링크 형식으로 게재한다.
- 각 반론보도문은 조정대상보도의 제목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본문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보도의 본문활자의 크기와 같게 한다.
-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 외 동일한 내용의 피신청인 보도에 대해서는 모두 위 조치사항과 같이 조치한다.
- 피신청인은 조치사항의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도 반론보도문 ①, ②을 각 조정대상보도의 본문하단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2024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



02

제 2 부

주요 언론조정사례

제3장 추후보도문 게재 사례

추후보도문 게재 사례

추후보도 사례 01 2024강원조정9·10 추후·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추후 및 반론보도, 열람차단)

학원 강사가 수강생들에게 폭언 및 폭행을 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와 관련, 원 보도를 열람차단하고 무죄판결 사실과 신청인의 입장을 반영한 추후 및 반론보도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학원 강사인 신청인이 10대 원생들을 대상으로 폭행, 폭언 등을 일삼는 한편, 불공정하게 학원을 운영했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되어 관계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사실관계 확인 없이 보도를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은 항소심 재판부가 학생들의 진술 외에는 증거가 없었고, 그 진술이 허위 또는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신청인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아동학대 민원 조사 단계에서 기사를 송출함으로써 지역 내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고, 이로 인해 신청인과 신청인이 소속된 학원의 이미지가 추락하고 매출이 급감하게 돼 결국 폐원했다며 추후보도와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자신을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신청인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신청인은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해 법리오해가 있다는 취지로 이의신청한 바 있고, 보도를 작성한 기자와 피해자 학생들의 어머니가 지인 관계라며, 피신청인의 보도는 사적 관계에 근거해 일방의 입장만 반영한 편파보도라고 반박했다.

중재부는 신속하고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양 당사자의 주장을 반영하는 조정안을 먼저 제안한 후, 중재부가 제안한 조정안에 대해 양 당사자가 재차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양 당사자의 입장을 좁히는 방식으로 심리를 진행했다.

조정 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무죄판결에 대한 추후보도 게재를 수용함과 동시에, 금전배상이 어렵다면 직접적인 사과를 원한다는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유감을 표명했다. 또 '신청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중재부의 조언에 따라 조정대상보도의 열람과 검색을 차단하는 조정안에도 동의하여 양 당사자 간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들은 열람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조정성립사항

추후 및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추후 및 반론보도] ○○ 소재 U학원 아동학대 혐의 무죄로 밝혀져

본문내용: 본지는 2021년 6월 22일 자 「[단독] ○○시 학생이라는 이유로 폭언을 감내해야만 하는가?」 제하의 기사 등에서 강원 ○○ 소재 U학원 강사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 민원이 제기되어 관계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며, ○○ 학교운영위원회연합회와 학부모회연합회가 해당 학원 및 언어폭력을 한 학원강사에 대해 공정한 처벌과 재발 방지대책을 촉구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2월 14일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원심판결 중 학원강사 A 씨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초기 진술에서 A 씨가 책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때리는 등의 피해사실에 대한 언급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위와 같은 행동을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도 확보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진술 중 일부 딱밤을 때렸거나 뽕망치로 때렸다는 부분의 진술 내용만으로 A 씨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의 진술이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한 지역 매체에서 나를 아동학대범으로 보도했고, 제1심 판결 이후에는 학원을 폐원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선생님이라는 직업 말고는 다른 직업을 생각해본 적도 없기에 최소한의 생계만 이어갈 수 있다면 힘겨워도 명예 회복을 꼭 하고 싶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초기화면(경제·사회면의 첫 번째 이미지 기사 및 속보란)에 추후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추후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경제·사회면의 첫 번째 이미지 기사는 최초 24시간 동안 초기화면에 고정하여 게재하고,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열람차단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들의 열람 및 검색을 모두 차단한다.

추후보도 사례 02 2024경기조정200·201 추후·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취하(추후보도)

모 공공기관이 출자한 회사의 대표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내용을 해당 대표에게 누설하여 정보공개 청구인이 해당 대표 등으로부터 협박과 조직적 따돌림을 당했다고 보도했으나, 해당 대표의 협박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되자 이를 알리는 추후보도문을 게재하여 취하된 사례

보도내용

A 기관이 출자한 회사의 대표와 관련하여 급여 및 법인카드 사용명세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받자, 그 사실을 당사자인 대표 B 씨에게 누설하였다. 그로 인해 B 씨와 같은 시민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정보공개 청구인은 B 씨로부터 협박과 조직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며 대표직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다른 시민단체와 함께 진행했다.

신청이유

공공기관 출자회사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신청인은 자신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A 기관이 정보공개법 및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사실확인을 위해 당사자인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서 하단에도 '정보의 내용이 제삼자와 관련 있을 경우 제삼자에게 통지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으므로 정보공개청구 처리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은 보도 직후 정정보도 등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고, 반론보도로 합의가 되어 보도가 이행된 바 있다. 이후 경찰이 협박 혐의에 관해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을 하였기에 이를 알리고자 추후보도와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신청인은 본 조정사건 이전에 9개 매체의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고, 각 사건은 조정성립(반론보도, 기타) 또는 취하(반론보도)로 종결되어 해당 보도로 인한 피해가 모두 구제되었음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심리가 개최되기 전 불송치결정을 명시한 추후보도문을 게재함과 동시에 조정대상보도 하단에도 기존 반론보도문에 이어서 추후보도문을 게재한바, 신청인은 만족하고 취하했다.

※ 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 이외 다른 5개 매체의 기사에 대해서도 추후보도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고 각 사건은 모두 취하(추후보도)로 종결되어 해당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가 모두 구제되었음

조정대상보도

행·의정 감시 네트워크 중앙회와 ○○결재원 정보공개 진상규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지난 28일 △△ ○○○○결재원 본사 앞에서 ‘○○○○결재원장과 □□□□ 대표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단체들은 지난 2023년 12월 12일 ○○○○결재원(이하 ○○원)에 ○○원 자회사 □□□□ 대표 급여 및 성과급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해 비공개 처리됐다. 이어 2024년 4월 3일 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 사용 명세 정보를 요청, 부존재 통보를 받았다. 같은 달 9일 신청한 근무에 관한 정보공개사항은 공개됐다.

이와 관련 단체들은 “정보공개에 대한 ○○원의 비공개, 부존재 등은 제 식구 감싸기”라며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정보공개 자료를 당사자인 □□□□ 대표에게 넘겨 제삼의 여성 피해자가 협박과 함께 조직적 따돌림 등 심각한 인권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략]**

여성 피해자는 “□□□□ 대표가 이사장인 (사)◇◇◇◇◇◇국민연대 이사”라며 “그 단체 카톡방 등에서 협박, 조직적 따돌림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카톡 내용을 공개했다. **[후략]**

게재보도문

추후보도문

보도제목: 「시민단체, “○○원 100% 출자회사 □□□□ 대표, ○○원장 사퇴 촉구」 기사 관련

본문내용: 본지는 5월 31일 「시민단체, “○○원 100% 출자회사 □□□□ 대표, ○○원장 사퇴 촉구”」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결재원에 요청한 정보공개 요청 처리 절차 과정이 잘못되고, □□□□ 대표가 여성 이사에게 협박과 조직적 따돌림 등의 행위를 근거로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을 보도하여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의 조사 결과, 협박과 관련된 행위로 판단할 증거 자료가 불충분하여 혐의없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본 기사에서 주장하는 협박, 조직적 따돌림 등의 행위는 당사자 확인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하여 보도된 것으로, 여러 차례에 거친 경찰조사로 이어지게 되면서 심각한 정신적, 재물적 피해를 입히는 잘못된 사례가 발생하여 이를 바로잡습니다.

추후보도 사례 03 2024서울조정2102·2103·2104/2105·2106·2107 각 정정·추후·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일간신문, 인터넷신문 ⁸⁾
처리결과	조정성립(정정·반론 및 추후보도, 손해배상 50만 원)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승진을 위해 공문서를 변조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와 관련, 경찰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됨을 반영한 정정, 반론 및 추후보도와 50만 원의 손해배상이 함께 이루어진 사례

보도내용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승진을 위해 공문서(상장)를 변조하였고, 연구기관이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해당 연구원을 승진시켰다. 기관 내부에서 심사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는 비판이 일자 연구기관은 다시 법적 자문을 받았고, 결국 해당 연구원을 공문서 변조와 변조 공문서 부정행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공문서 변조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보도했으며, 본인은 해당 혐의에 대해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없음을 입증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은 보도 이후 온라인에서 이어진 무차별적 비난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사회적 평판이 저하되어 구직 활동도 곤란하다며, 매체별로 정정보도 및 추후보도와 총 1,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조정 과정에서 피신청인은 연구원 내부 관계자와 연구원 노조에서 제보한 성명서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하였고, 조정신청 이후에 연구원 노조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여 기사 내용에 잘못된 바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성명을 익명으로 처리했으며, 연구원 관계자의 멘트를 통해 신청인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중재부는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은 점, 혐의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한 점, 익명 처리에도 불구하고

8) 동일한 언론사가 발행하는 매체임

신청인이 특정된 점 등을 짚어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수사기관의 무혐의 결정에 대한 추후보도 등을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신청인은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강하게 요구하였고 피신청인도 소정의 금액이라면 손해배상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양 당사자는 중재부가 제시한 보도문과 상호 간 논의한 손해배상액에 합의하여 정정·반론·추후보도와 손해배상액 50만 원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①·③ **[전략]** 10일 ○○연에 따르면 ○○연 소속 A 연구원은 이달 선임급에서 책임급 승급 심사를 앞두고 가점을 받기 위해 자신이 포함된 단체가 받은 상을 개인상으로 변조해 승급심사 증빙서류로 제출했다.

○○연 내부규정에 따르면 승급 심사 시 단체상이 아닌 개인상만 포상 실적에 포함돼 가점이 주어진다. A 연구원은 이 점을 고려해 단체상 수상자에 포함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지우고, 자신이 단독으로 받은 상처럼 변조했다. 이후 인사 부서에서 서류 변조 사실을 확인했고, 해당 직원은 다시 변조한 내용을 무단 삭제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략]**

○○연 관계자는 "승급 심사 대상 포함 여부를 놓고 인사위원 간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오갔다"며 "해당 직원이 변조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 가점 신청을 자진 회수한 점, 수상 실적이 승진평가 점수에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결국 승급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후 진행된 승급 심사에서 해당 직원은 승진 하한 점수를 초과해 최종 승진 대상자에 포함됐다. **[후략]**

②·④ ○○○○○○연구원이 승급 심사를 위해 포상 실적 서류를 변조해 제출했다가 적발된 A 책임연구원을 경찰에 고발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은 증빙서류를 위조한 A 씨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음에도 승급 심사 대상자에 포함시켜 기관 내부에서 공정성 논란을 빚은 바 있다.

17일 ○○연에 따르면 이 기관은 승급 심사에서 가점을 얻기 위해 포상 서류를 변조한 A 씨를 지난 12일 △△ □□경찰서에 공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중략]**

A 씨는 이달 초 진행된 선임연구원에서 책임연구원 승급 심사에서 자신과 동료가 공동 수상한 포상 명단 중 상대방의 이름을 지우고 본인 혼자 받은 것처럼 변조해 인사부서에 제출했다가 확인 과정에서 적발됐다. ○○연은 원장의 지시에 따라 감사부의 감사를 통해 A 씨가 포상자 이름을 변조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고 처분을 내렸다. **[후략]**

제3장

추후보도문 게재 사례

조정성립사항

정정·반론 및 추후보도문

보도제목: [정정·반론 및 추후보도문] <승급 심사자료 변조 논란 ○○연 직원, "무혐의"로 밝혀져>

본문내용: 본 신문은 지난 2024년 3월 11일과 18일 ◇◇◇타임스 IT과학면과 3월 10일과 17일 인터넷 ◇◇◇타임스 ICT과학면에 <승급 심사자료 변조 직원 승진… 공정성 논란 쏟아올린 ○○연>, <○○○○연 연구자, 승진 서류 변조로 경찰 고발> 등 제목의 기사에서 A 연구원이 승급심사에서 가점을 받기 위해 단체상을 개인상으로 변조 후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최종 승진됐다고 보도하면서 ○○연이 공정성 논란을 빚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공문서 변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공문서 변조 등과 관련해 △△ □□경찰서 수사 결과, ○○연이 A 연구원을 상대로 고발한 사안은 지난 6월 13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A 연구원은 “승진과 상관없이 대외에서 상장을 수상하였다는 사실만을 신고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공동수상자의 의사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외부인의 성명만을 삭제하였을 뿐, 단체상임을 표시해 제출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대외포상신고서의 오기를 수정하고 첨부 자료를 변경하기 위해 내부 안내 절차에 따라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 전산 의뢰서를 제출하였기에 변조 및 무단 삭제가 아니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ICT과학면 기사목록 상단에 정정·반론 및 추후보도문을 24시간 고정하여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반론 및 추후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이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들 본문 하단에 정정·반론 및 추후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고 계속 확인되도록 한다. 단, 상자, 음영, 볼드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원보도와 구분되도록 한다.
- 네이버, 다음 등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 조치사항을 전송한다.

일부 열람차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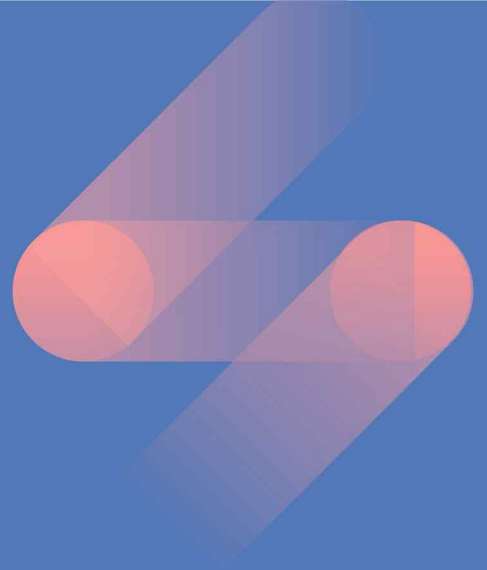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④의 부제목 「…」을 삭제한다.

손해배상

- 피신청인은 2024년 10월 7일(월) 까지 손해배상금으로 금 500,000원을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한다. 피신청인이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납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024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



02

제 2 부

주요 언론조정사례

제4장 손해배상금 지급 사례

손해배상금 지급 사례

손해배상 사례 01 2024서울조정992 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정정보도, 열람차단, 손해배상 200만 원)

사회적인 관심이 높은 사건의 경과를 보도하면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반인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해 정정보도와 200만 원의 손해배상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

보도내용

연예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영상으로 제작해 유명해진 유튜버에 대한 근황 및 피소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의 패소 사실을 보도하면서 해당 유튜버로 추정되는 인물의 초상을 게시했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보도에서 언급된 유튜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피신청인이 SNS에 공개된 신청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초상에 대해 비식별 처리를 하였으나 그 처리가 미흡해 지인들로부터 많은 연락을 받게 되었고, 불특정 다수의 누리꾼이 외모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고 밝혔다. 신청인은 보도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적극적으로 유감을 표하면서 기사 삭제 등의 조치를 통해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청인 측은 꾸준히 보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해당 기사가 계속 게시되었고 조정신청 후에야 기사삭제 조치가 이루어져 큰 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중재부는 손해배상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현실성 있는 금액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정정보도를 이행할 의사가 있고, 손해배상은 합리적인 수준이라면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인도 정정보도 등이 이루어진다면 손해배상액을 낮출 의향이 있다고 했다.

이에 중재부는 정정보도 게재 및 열람차단, 손해배상액을 200만 원으로 하는 조정안을 제시했고, 양 당사자가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됐다.

※ 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 이외 다른 1개 매체의 기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고, 해당 사건은 취하(열람차단)로 종결되어 피해가 구제되었음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조정성립사항

정정보도문

보도제목: [정정보도] <‘장원영과 합의 실패’ △△수용소 박□□ 신상·얼굴 싹 털린 후 오늘 자 근황 공개됐다 (+사진)> 관련

본문내용: 본 신문은 지난 3월 6일 자 <‘장원영과 합의 실패’ △△수용소 박□□ 신상·얼굴 싹 털린 후 오늘 자 근황 공개됐다 (+사진)> 라는 제목으로 박□□의 얼굴이라며 사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본지가 게재한 인물 사진은 해당 사이트 운영자인 박□□가 아닌 일반인 사진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 섹션 기사 목록 상단(5번째 이내)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보도문의 제목은 이후 최초 24시간 동안 <◇◇◇◇◇> 섹션 기사목록 상단에 나타나도록 유지한다.
- 위 항의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도 정정보도문을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의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서 계속 검색되도록 한다.
- 네이버,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 조치사항을 전송한다.

열람차단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초상이 드러나는 모든 기사와 사진 등 일체 자료를 삭제한다.

손해배상

- 피신청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아래 신청인 대리인의 계좌로 금 2,000,000원정을 지급한다.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미지급금에 대하여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완납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4장

손해배상금 지급 사례

손해배상 사례 02 2024서울조정1432·1433·1434,
2024서울조정1435·1436·1437(병합)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일반기업체
피신청인 매체유형	A 인터넷신문, B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열람차단, 손해배상 500만 원)

회계법인이 외부 감사 과정에서 피감사기업에 대해 갑질을 일삼았다는 보도와 관련, 중재부가 열람차단 및 500만 원 손해배상으로 직권결정한 사례

보도내용

C 회계법인이 회계감사 과정에서 '적정' 의견 제시를 미끼로 갑질을 일삼았다. C 회계법인은 '적정' 의견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것처럼 하다가 감사 종료를 앞두고 돌연 '한정' 또는 '의견거절'과 같은 '비적정' 의견으로 결론을 내거나, 무리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함으로써 피감사기업들이 소명자료 준비를 위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비용을 따로 지출하도록 했다.

또한 C 회계법인은 피감사기업이 고용한 외부전문가에 대한 적격성 확인을 요청하거나 외부전문가 변경을 요청하기도 하였고, 회계감사를 연장한다며 감사 비용을 증액해 청구하기도 하는 등 실질적인 상위 의사결정 기관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

신청이유

신청인 회계법인은 외부조사인 선임이나 디지털 포렌식 등 비용 소모가 큰 조사 방법은 회계법인이 정하는 게 아니라 피감사기관이 선택하는 사항인바, 회계법인이 감사 진행 중 재무제표에서 비정상적인 사항을 확인해서 지적하면 피감사기업은 상장심사 통과나 주가방어 등을 위해 스스로 합당한 조사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기업이 어떤 조사 방법을 선택하든 회계법인에게 별도로 이익되는 바도 없어 특정 조사 방법을 선택하도록 강요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초기 감사에서 '의견거절'이 제시된 D 기업의 경우 보도에 제시된 사유와 다른 사유로 '의견거절'이 결정됐으며, 보도에서 언급된 지적 사항은 해당 기업이 선임한 외부조사인이 적발한 것으로, 신청인 회계법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감사 결과는 반드시 심리를 거치게 되어 있기에 담당자가 감사 종료 전 '적정' 의견을 제시하거나, 확정을 보장했을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추가 감사 비용은 증가한 시간에 따라 청구해야 하는 정상 비용보다 적게 청구했다가 해당 기업이

전액 지불 의사를 밝혀 정상 비용을 청구했던 만큼 신청인 회계법인이 피감사기업에게 과도한 비용을 청구했다는 보도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신청인 회계법인은 신뢰를 기반으로 기업들과 업무를 진행해오고 있음에도 피신청인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 언론사별로 정정 및 반론보도와 1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갑질이라는 자극적인 타이틀이 들어간 기사를 오래 노출해 고객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다면서 열람차단이 가능하다면 정정보도는 포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손해배상액으로 최소한 2천만 원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계법인에 대한 다양한 제보를 받고 그 진위의 확인과 반론 확보를 위해 신청인 측에 연락했음에도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은 수용할 수 없지만 반론보도나 열람차단 등은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했다.

중재부는 'D 피감사기업의 재무팀 전원 사직', '감사의견 번복' 등의 보도 내용이 확인된 사안인지 지적했고 확인되지 않았다면 정정보도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사실관계가 잘못된 보도로 인해 신청인이 큰 피해를 입었다면 소정의 손해배상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양 당사자는 정정보도보다는 열람차단으로 합의할 의향이 있음을 보였으나, 손해배상에 대한 의견 차이와 현재 진행 중인 형사 분쟁 건 등으로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에 중재부는 피신청인 보도에 고의 및 악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보도 후 피해구제 노력 등 감액 요소를 고려해 손해배상액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 조정대상보도는 열람차단하면서 진행 중인 형사 분쟁 건은 취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결정이 확정됐다.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들은 열람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항

열람차단

- A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및 B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들이 더 이상

제4장

손해배상금 지급 사례

노출되지 않도록 열람차단한다.

- 네이버, 다음 등 계약에 의해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들을 공급한 각 인터넷 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들이 더 이상 열람되지 않도록 요청한다.

손해배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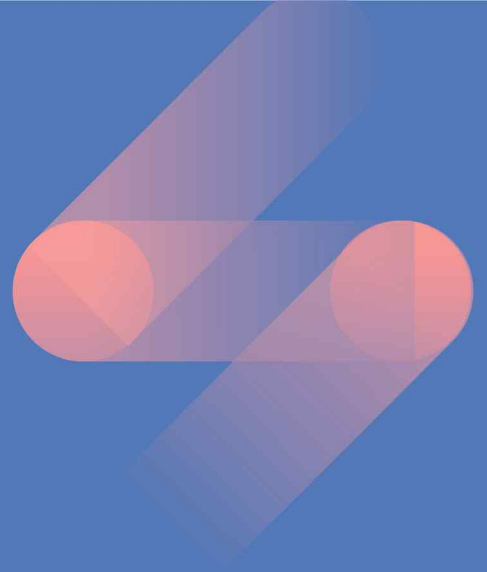
-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다. 피신청인들이 위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완납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부제소(형사고소 취하)

-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들을 작성한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를 취하하며, 조정대상보도들과 관련한 피신청인들 및 소속 임직원에게 대해 손해배상 이외에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24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



02

제 2 부

주요 언론조정사례

제5장 기사열람차단 및 수정 사례

기사열람차단 및 수정 사례

기사열람차단 및 수정 사례 01 2024경기조정101·102/103·104 각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일간신문,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열람차단, 손해배상 100만 원, 기타)

신청인이 시부모의 재산을 증여받고 공동으로 약국을 운영하기로 하고 혼인했음에도 수익 배분을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정리하고 잠적했다는 보도와 관련, 중재부가 열람차단과 손해배상액 100만 원을 직권 결정한 사례

보도내용

결혼을 전제로 재산 증여를 요구해 온 약사 며느리에게 시부모는 10억 원 상당 재산을 증여하고, 약국을 차려주면서 공동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며느리는 시부모에게 지속적으로 약국 운영비를 요구하면서도 수익에 대해서는 전혀 배분하지 않다가 일방적으로 폐업하고 잠적하였고 혼인신고도 이루어지지 않아 시부모와 아들은 약사 며느리를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취재 기자가 약사의 반론을 듣기 위해 명함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취했으나 ‘없는 번호’라고 안내됐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시부모의 재산을 증여받은 적이 없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여서 신랑의 재산과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약국 정리와 폐업에 관한 내용은 시부모 및 신랑과 사전에 논의를 거쳐 서로가 인지하고 있던 상태였고, 폐업 당시 시부모에게 약국 투자금 전액을 반환했다고 했다. 그리고 약국 폐업은 시부모 입회하에 진행됐으며, 폐업 당일 물품을 모두 정리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여 급하게 정리를 했다고 밝혔다.

또 투자 약정서에는 개업 초기 수익보다 지출이 많을 것을 고려하여 개업 3개월 후 수익 배분을 시작하기로 했기에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며, 약국 건물 등 재산의 양도를 요구한 적도 없다고 했다. 덧붙여 피신청인이 연락을 취한 신청인의 전화번호는 사업자용으로, 폐업하면서 말소했다고 밝혔다.

피신청인 보도로 신청인은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원이 특정되어 취업이 취소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한바, 피해 회복을 위해 매체별로 정정보도와 총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사연을 접하고 취재를 하면서 신청인의 반론을 반영하고자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면서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성명을 비식별 처리하는 등 기사 작성에 주의를 기울였기에 손해배상할 사안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한편, 원 보도에 미 반영된 신청인의 반론보도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신청인은 반론보도보다 정정보도를 희망하며, 정정보도가 어렵다면 열람차단 조치라도 꼭 이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해가 큰 만큼 손해배상도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입장이었다. 중재부는 보도에서 비식별처리를 했다 할지라도 보도의 전후 맥락을 통해 신청인을 추지할 수 있고, 기사 댓글에 신청인의 성씨와 기존 근무 장소가 언급되어 있어 독자들이 쉽게 신원을 특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중재부는, 제보자 측과 이 사건 신청인 간 주장이 대립하고 있어 사실관계 확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의 주장만을 반영해 기사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보도에서 언급한 약정서가 약국의 공동 운영에 관한 것이라기보다 임대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양 당사자의 제출자료 및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재부는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대신 열람차단을 권유했고 양 당사자 모두 수용 의사를 보였다. 다만,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재부가 열람차단과 손해배상 100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결정이 확정됐다.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항

열람차단

- 피신청인은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댓글 포함)를 열람차단하여 향후 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조치사항을 전송한다.

손해배상

-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아래 신청인의 계좌로 1,000,000원을 지급한다.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위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기사열람차단 및 수정 사례 02 2024강원조정27 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일간신문,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취하(열람차단)

반려견 관련 유튜브 영상에 달린 비판 댓글에 대해 해당 유튜버가 댓글 작성자의 자녀 이름을 언급하며 조롱하는 답글을 달아 논란이 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피신청인이 사전 취하를 전제로 열람차단을 제안하자 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여 심리전 취하된 사례

보도내용

반려견 콘텐츠로 유명한 유튜버가 자신의 대형견에 입마개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댓글에 대해 댓글 작성자의 가족 신상(자녀의 성명)을 언급하며 '아이들이나 묶어 다니라'고 조롱하는 답글을 남겨 논란이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댓글 작성자의 신상을 털어 공개한 적이 없고, 단순히 댓글 작성자의 SNS 소개란에 공개된 이름을 언급한 것으로, 댓글 작성자 또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해당 이름을 반려동물 이름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반론을 듣기 위해 SNS 메시지와 이메일로 연락을 시도했다고 했으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은 바가 없다고도 했다.

신청인은 해당 보도와 보도에 달린 댓글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댓글로 직장 정보가 노출되어 퇴직까지 하게 되었다며 손해배상으로 500만 원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SNS 계정에 올린 사과문에는 댓글 작성자의 자녀들 이름으로 인지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기에 손해배상을 수용하기는 어렵다면서 취하를 전제로 열람차단은 가능하다는 의사를 밝혔다.

기일 전 피신청인 의견을 전달받은 신청인은 심리에 출석하지 않고도 피해 확산을 조금이라도 빨리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신청인 의견을 수용하고 심리전 취하로 종결됐다.

※ 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 이외에 12개 매체의 기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이 중 10개 사건은 열람차단으로 취하가 되었고, 나머지 2건은 조정불성립결정(1건)과 기각(1건)으로 종결됐다.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기사열람차단 및 수정 사례 03 2024서울조정2317·2318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뉴스통신
처리결과	조정성립(기사수정, 일부 열람차단)

동료직원들의 인사평가 점수를 무단 열람·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신청인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보도 관련, 독자들의 오해를 살 수 있도록 표현된 신청인의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기반해 자세히 설명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고 일부 내용은 열람차단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동료 직원들의 인사평가 점수를 몰래 열람하고 이를 유출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공공기관 직원 A 씨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평가 점수는 개별적으로 부여받은 인터넷 주소(URL)에 접속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데, A 씨는 URL 끝의 일련번호를 고쳐 타인의 점수를 확인한 후 이를 휴대폰으로 캡처하여 다른 직원에게 유출했다. 수사 초기 A 씨는 “보안 부실의 증거를 수집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련번호를 바꾸어 다른 사람의 평가 결과 페이지에 접속했다라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해당 인터넷 페이지에 접속하기 위해 별도로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불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신청이유

신청인 A 씨는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문에 ‘인사평가 결과를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페이지는 별도의 로그인이나 인증 절차 없이 접속이 가능하였고 인터넷 주소도 암호화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반면, 기사의 내용은 동료들이 개별적으로 부여받은 인터넷 주소에 신청인이 불법적으로 접속하고 유출한 것처럼 기술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은 초기 수사에 전산 담당자로서 “개인정보 보안 점검 및 내부 감사 점검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보안 부실의 증거를 수집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고도 했다.

신청인은 보도 내용의 확산으로 인해 인격을 모독하는 댓글을 받았고, 자신의 신원이 특정되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와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이 없으므로 정정보도는 어려우나 신청인의 입장을 고려해 판결문의 내용을 보다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술하는 방향으로 기사 내용을 수정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신청인은 피해구제 보도문 게재를 전제로 합의하고자 했으나, 중재부는 피신청인의 입장 및 신청인의

제5장

기사열람차단 및 수정 사례

피해구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사수정을 제안했고, 신청인 또한 피신청인의 적극적인 노력과 중재부의 권유에 기반해 제안을 수용,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동료 직원들의 인사평가 점수를 몰래 열람하고 이를 유출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 직원이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중략]**

A씨는 2019년 12월 30일부터 이듬해 1월 3일까지 인사평가 항목 중 하나인 동료 직원들의 다면평가 점수를 무단 열람한 뒤 해당 화면을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다른 직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동료 직원들로부터 받는 평가 점수는 개별적으로 부여받은 인터넷 주소(URL)에 접속해야만 확인할 수 있다.

A씨는 URL 끝 일련번호 등만 바꿔 입력하면 다른 사람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다는 허점을 이용해 직원들의 점수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휴대전화 사진으로 갈무리(캡처)된 평가 점수는 일부 직원 사이에 공유됐다.

피고인은 수사 기관 조사에서 점수를 열람한 이유에 대해 “매년 작성하는 ‘개인정보 보안 점검 및 내부 감사 점검 결과 보고서’를 위해 (보안 부실의) 증거를 수집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터넷 주소의 일부 숫자를 바꾸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다면평가 결과가 게시된 페이지에 접속했다더라도 이를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해당 인터넷 페이지에 접속하기 위해 별도로 부정할 수단 또는 방법으로 불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 조정대상보도 중 일부 열람차단 된 부분은 수록하지 않음

조정성립사항

보도방법

- 뉴스통신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를 [별지]와 같이 수정한다.
- 피신청인은 계약에 의해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포털 뉴스서비스에 한함)에게 조치사항을 전송한다.

기사수정(별지)

〈조정대상보도 본문 수정 ①〉

(수정 전) 다른 직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수정 후) 다른 사내 간부급 직원에게 전송해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및 보관되고있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정대상보도 본문 수정 ②〉

(수정 전) 동료 직원들로부터 받는 평가 점수는 개별적으로 부여받은 인터넷 주소(URL)에 접속해야만 확인할 수 있다. A씨는 URL 끝 일련번호 등만 바꿔 입력하면 다른 사람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다는 허점을 이용해 직원들의 점수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휴대전화 사진으로 갈무리(캡처)된 평가 점수는 일부 직원 사이에 공유됐다.

(수정 후) 앞서 직원 다면평가 용역 계약을 맡은 B업체는 직원들의 이메일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개인별로 부여된 인터넷 주소를 전송해 자신의 다면평가 결과를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조정대상보도 본문 수정 ③〉

(수정 전) 피고인은 수사 기관 조사에서 점수를 열람한 이유에 대해 “매년 작성하는 ‘개인정보 보안 점검 및 내부 감사 점검 결과 보고서’를 위해 (보안 부실의) 증거를 수집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 후) 피고인은 수사 기관 조사에서 점수를 열람한 이유에 대해 “매년 작성하는 ‘개인정보 보안 점검 및 내부 감사 점검 결과 보고서’를 위해 (보안 부실의) 증거를 수집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회사 전산담당자로서 시스템 보안 개선사항을 체크한 것이고 휴대전화 사진은 직원들에게 유포한 것이 아니라 뒷선에 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정대상보도 본문 수정 ④〉

(수정 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터넷 주소의 일부 숫자를 바꾸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다면평가 결과가 게시된 페이지에 접속했다라도 이를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해당 인터넷 페이지에 접속하기 위해 별도로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불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수정 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B 업체가 임직원들에게 본인의 다면평가 결과가 게시된 인터넷 주소만 개별적으로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다면평가 결과가 게시된 인터넷 주소를 입력하는 방법만으로 평가 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이상 인터넷 페이지의 접근 권한을 해당 평가 대상자인 임직원 본인으로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피고인이 인터넷 주소의 일부 숫자를 바꾸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다면평가 결과가 게시된 페이지에 접속했다라도 이를 부정한 수단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일부 열람차단

- 조정대상보도 중 ‘……’를 삭제한다.

기사열람차단 및 수정 사례 04 2024서울조정981, 2024서울조정982(병합) 각 손해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유튜브 채널, 방송사닷컴(인터넷뉴스서비스)
처리결과	조정성립(기사수정, 동영상 플랫폼 조치)

국회의원 후보가 건 현수막의 문구가 공직선거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문제 없다'는 답변을 내놓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빈축을 사고 있다는 보도 관련, 해당 답변을 한 신청인의 녹취 음성을 식별할 수 없도록 기자의 음성으로 대체하고 리포트 내용도 수정하는 안을 피신청인 측이 먼저 제안하여 합의에 도달한 사례

보도내용

총선을 앞두고 A 정당 후보 J 씨는 “사전투표로 정권심판”이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걸었다. 이를 본 B 정당 후보 Y 씨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선관위는 이미 J 후보 측에 문제가 없다고 답했으나, Y 후보 측의 항의 이후 내부 지침 등을 재검토한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시인했다.

신청이유

해당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국회의원 후보 Y 씨 측 관계자 간의 통화 녹취를 내보내면서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직장에서 무능한 직원으로 낙인찍히고, 가족과 지인들은 신청인이 큰 범죄를 저지른 줄 알고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측이 형식적인 음성변조를 한 후 허락 없이 녹취파일을 방송에 공개했고, 그 결과 음성권과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며 피신청인 언론사별로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 측은 해당 녹취를 Y 후보 측으로부터 제공받았고 신청인과의 직접 통화하여 관련 취재 사실을 알린 후 신청인의 입장에 대해서도 취재해 보도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청인은 선거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 보도의 취지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며, 신청인의 음성도 충분히 변조하여 보도하는 신중을 기했다고 주장했다.

피신청인 측은 피해를 주장하는 신청인의 이익을 위해 음성변조 처리 수준을 강화하거나 신청인의 육성을 삭제한 뒤 삭제된 내용을 기자가 재설명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수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중재부는 보도에 손해배상을 인정할 정도의 과실은 없어 보인다는 의견과 피신청인 측이 제안한 방향이 합리적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신청인은 음성 대체만으로 본인에게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으나, 중재부는 선관위의 기관 중요도를 고려할 때 보도 공익성이 인정된다는 점, 음성 삭제와 영상 재편집 등 피신청인이 먼저 제안한 안이 실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들어 신청인을 설득하였고, 양 당사자가 해당 안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 지역구 곳곳에 걸린 현수막입니다.

4월 총선 사전투표를 안내하는 내용으로 A당 J 후보 측이 내걸었는데, 문제가 된 건 “사전투표로 정권심판”이란 문구였습니다.

B당 Y 후보 측이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비방하면 안 된다며 지역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이미 선관위는 검토를 통해 전 후보 측에 문제가 없다고 답한 상태였는데, 이후 Y 후보 측이 항의하자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지역 선관위 관계자 (Y 후보 측과 통화) : 좀 짹짹해서, 선례를 읽어보니까 ‘위반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좀 ‘심쿵’했어요. 답변이 잘못 나간 것 같아서….]

내부 지침 등을 다시 살펴본 결과 공직선거법을 어겼을 수 있단 사실을 뒤늦게 알았던 겁니다. ‘정권심판’이라는 문구가 특정 정당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설물 설치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 90조’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선관위 설명입니다.

[지역 선관위 관계자 (Y 후보 측과 통화) : 저희 잘못이죠, 뭐 이거는. 중앙에선 이걸 가능하면 안 되는 쪽으로 이렇게 그게 온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좀 이렇게 참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어요.] **[후략]**

조정성립사항

보도방법

- 네이버, 다음 등 계약에 의해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 뉴스서비스에 한함)에게 조치사항을 전송한다.

제5장

기사열람차단 및 수정 사례

기사수정

- 피신청인들은 유튜브 채널 및 방송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들 중 신청인의 욕성이 노출된 부분인 ①과 ②를 삭제하고, 기자의 욕성으로 재설명하는 영상으로 편집해 신청인의 욕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조정대상보도 음성 및 리포트 교체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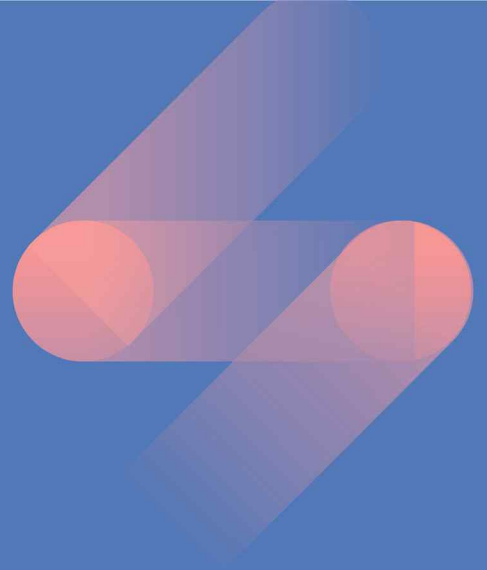
수정 전 (신청인의 욕성 노출)	수정 후 (기자의 욕성으로 재설명)
이후 Y 후보 측이 항의하자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지역 선관위 관계자 (Y 후보 측과 통화) : 좀 짹짹해서, 선례를 읽어보니까 '위반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좀 '심쿵'했어요. 답변이 잘못 나간 것 같아서...	이후 Y 후보 측이 항의하자 지역 선관위 관계자는 "선례를 읽어보니까 위반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답변이 잘못 나간 것을 뒤늦게 깨닫고 많이 놀랐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조정대상보도 음성 및 리포트 교체 ②〉

수정 전 (신청인의 욕성 노출)	수정 후 (기자의 욕성으로 재설명)
[지역 선관위 관계자(Y 후보 측과 통화) : 저희 잘못이죠, 뭐 이거는. 중앙에선 이걸 가능하면 안 되는 쪽으로 이렇게 그게 온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좀 이렇게 참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어요.]	지역 선관위 관계자는 Y 후보 측과의 통화에서 "이번 일은 지역 선관위의 잘못이고 중앙선관위에선 안 되는 쪽으로 답변이 온 것 같다"며 "그래서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4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



02

제 2 부

주요 언론조정사례

제6장 동영상 플랫폼 조치 사례

동영상 플랫폼 조치 사례

동영상 플랫폼 조치 사례 01 2024서울조정2335·2336/2337·2338 각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방송, 방송사닷컴(인터넷뉴스서비스)
처리결과	조정성립(반론보도, 열람차단, 동영상 플랫폼 조치)

신청인이 임무 수행 중 불미스러운 이유로 납북되었다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방송사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에 게재된 클립 영상을 열람차단하고 OTT에 업로드된 영상 말미에 자막 형식의 반론보도문을 추가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일명 ‘CKW 사건’은 북·중 접경지역인 단동에서 정보사 소속 블랙 요원이 북한에 납치됐다가 귀환한 사건을 의미한다. 정보사는 관련 조사에서 해당 요원이 특수 임무 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1차 결론 내린 바 있다. 그런데 조사 중 해당 요원이 조선족 여성과 교류하던 중 신분이 노출됐고, 이 여성이 밀수 혐의로 북한에 붙잡힌 오빠를 구명하기 위해 정보를 넘겼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귀환한 해당 요원은 기밀 유출은 없었고, 북한 측의 심문 과정에서 역정보를 흘리면서 탈출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취조과정에서 가족의 안위 등에 대한 북한 측의 협박으로 김일성·김정일 초상 앞에서 충성을 맹세하였고 중국 내 블랙요원 네트워크와 주요 거점 정보를 누설한 정황이 드러났다.

신청이유

보도에서 납북된 블랙 요원으로 언급된 신청인은 방송에서 조선족 여성에게 신분을 노출해 납북되었다고 묘사됐으나, 실제로는 공작원으로 양성 중이던 조선족 남성이 불법 어로행위를 적발당해 처벌받게 되자 면책을 위해 신청인을 밀고하면서 신청인이 납북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프로그램에서는 신청인이 ‘귀국 이후 조사 과정’에서 역공작 개념의 이중스파이임을 실토했다고 했지만, 신청인은 중국 현지에서 우리나라 조직에 인계된 이튿날 바로 역공작 임무를 맡아 돌아왔음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은 기밀정보를 누설하지 않고 오로지 납치 당시 보유하던 메모장의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했을 뿐이라며, 귀국 후 별도의 건강 체크나 치료 없이 바로 당국의 조사에 임하였다고도 덧붙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을뿐더러 동의도 구하지 않고 전국 방송에 실명을 노출했고 신청인의 납북 사건을 개인적인 일탈에서 비롯된 것처럼 묘사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한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매체별로 정정보도와 총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과거 신청인을 취재한 기자 출신 패널의 취재 사항을 바탕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으로서 취재 당사자를 통해 해당 내용에 잘못된 바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은 수차례나 되는 피신청인의 프로그램 출연 제의를 모두 사양했음에도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신청인의 실명을 밝히며 관련 내용을 방송하였다는 점과 피신청인이 해당 내용을 방송하기 며칠 전에 이미 타 언론사를 통해 신청인의 입장을 밝혔는데도 피신청인이 이를 무시하고 방송을 감행했다는 점을 짚어 피신청인 방송에 악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재부는 피신청인이 타 언론사 보도를 통해 신청인과의 입장 차를 알게 되었다면 그 내용에 대해 재차 확인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했다고 보았다. 양 당사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재부는 미인계 때문에 발생한 사건인 양 패널들이 단정적으로 표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표현을 자막으로 옮겨 시청자들이 미인계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양 당사자는 중재부의 권유를 받아들여 유튜브 및 방송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청인 관련 클립 영상을 열람 차단하고 인터넷 및 OTT 영상에 반론보도문을 자막 형태로 추가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들(①·②)은 열람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조정성립사항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반론보도] ○○ ○○○ ○○○ 000회 ‘CKW사건’ 관련

본문내용: 본 방송은 지난 9월 29일 정보사의 △△△ □□이 북한에 납치당한 이유가 미인계 때문이며, 자기 가족을 구하기 위해 중국 내 다른 블랙요원 네트워크에 대해 누설하였으며, 대한민국에 돌아온 후 정보사 조사과정에서 경비가 허술해진 틈을 타 탈출했다고 진술했다가 강도 높은 취조를 받고 역용되었음을 실토하였다는 방송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 □□은 “북한에 납치당한 이유는 치정과 관련이 없고, 중국 남성 공작원의 배신으로 인한 것이며, 중국 내 다른 블랙요원 네트워크에 대해 누설한 사실이 없고, 대한민국 측에 인계된 후 역공작 임무를 띠고 탈출하는 방법으로 돌아왔다고 즉시 보고하였으며, 국정원 및 기무사에서

제6장

동영상 플랫폼 조치 사례

피랍과정을 조사받을 때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방송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 ②의 영상 및 [별지]의 항목 6의 영상 뒷부분에 반론보도문을 자막 형태로 보도한다.

열람차단

- [별지]의 항목 5의 방송사 홈페이지의 클립 영상들을 모두 열람 차단한다.

동영상 플랫폼 조치

- [별지]의 항목 2, 3, 4의 유튜브 영상들을 모두 열람 차단한다.

[별지] 조정합의서 이행 대상 목록

※ 별지의 이행 대상 목록은 양 당사자 간 합의한 것으로, 열람차단되었음을 고려하여 주소(URL)을 표기하지 않음

1. 방송사 홈페이지

순번	제목	일시
1	○○ ○○○ ○○○ 000회	2024.XX.XX

2. 유튜브채널 ◇◇◇◇ ◇◇◇◇

순번	제목	업로드일시
1	[#○○○모아보기] 北 평양까지 끌려간 블랙 요원! 한국에 돌아오기까지의 △ □□의 여정은? 사건 뒤 숨겨진 반전은? ○○ ○○○ ○○○ 000회	2024.XX.XX
2	죽은 줄 알았던 △ □□! 6개월만에 연락온 그에게 무슨 일이?! ○○ ○○○ ○○○ 000회	2024.XX.XX
3	△ □□이 북한에 납치된 이유는 미인계 때문?? 평양까지 끌려간 블랙 요원, 6개월 후 탈출 성공?! ○○ ○○○ ○○○ 000회	2024.XX.XX
4	북한 영변 핵 시료를 최초로 가져온 △ □□?! 돌과 흙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 증거를 전 세계에 알리다 ○○ ○○○ ○○○ 000회	2024.XX.XX
5	북한식 블랙 요원 활용법? △ □□, 북한의 협박에 이중간첩이 되다? ○○ ○○○ ○○○ 000회	2024.XX.XX
6	[예고] XX년 전 북에 블랙 요원 기밀 문건 유출 사건이 또 있었다? 일명 'CKW사건' ○○ ○○○ ○○○ 000회	2024.XX.XX
7	[#◎◎◎] △ □□이 사라졌다! 비밀 첩보 요원을 납치 협박해 기밀문서를 빼간 북한 CKW 사건의 전말 #○○○ 1시간 몰아보기	2024.XX.XX

3. 유튜브채널 ☆☆☆ ☆☆☆☆☆

순번	제목	업로드일시
1	[#▽▽▽] 국가 안보 大위기 블랙 요원 신원 정보 노출 사건의 전말은? #○○○○○○○○○ 000회	2024.XX.XX

4. 유튜브채널 ○○○○○○: ○○○ ○○○○○○ & ○○○○○○

순번	제목	업로드일시
1	[#▽▽▽] 국가 안보 大위기 블랙 요원 신원 정보 노출 사건의 전말은? #○○○○○○○○○ 000회	2024.XX.XX
2	[#◁◁◁] 국가 정보망 붕괴 사태!! 블랙 요원들의 가족들을 인질로 협박해 정보를 빼내는 북한! #○○○ 000회	2024.XX.XX

5. 방송사 홈페이지(인터넷뉴스서비스) 클립 열람차단

순번	업로드일시	제목
1	2024.XX.XX	[#▷▷▷▷] 북한 핵 실험 증거를 찾아낸 블랙 요원이 북한에 납치된 이유는? 미인계 때문?!
2	2024.XX.XX	[#□□□모아보기] 北 평양까지 끌려간 블랙 요원! 한국에 돌아오기까지의 △ □□의 여정은? 사건 뒤 숨겨진 반전은?
3	2024.XX.XX	북한식 블랙 요원 활용법?! △ □□, 북한의 협박에 이중간첩이 되다?
4	2024.XX.XX	△ □□이 북한에 납치된 이유는 미인계 때문?? 평양까지 끌려간 블랙 요원, 6개월 후 탈출 성공?!
5	2024.XX.XX	죽은 줄 알았던 △ □□! 6개월만에 연락은 그에게 무슨 일이?!
6	2024.XX.XX	북한 영변 핵 시료를 최초로 가져 온 △ □□!? 물과 흙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 증거를 전 세계에 알리다

6. 반론보도문 편집수정본 게시

플랫폼	제목
방송사	○○ ○○○ ○○○ 000화
애플tv	○○ ○○○ ○○○ 000화
Wavve	○○ ○○○ ○○○ 000화
TVING	○○ ○○○ ○○○ 000화

02 주요 언론조정사례 - 제6장 동영상 플랫폼 조치 사례

동영상 플랫폼 조치 사례 02 2024경기조정182·183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정정보도, 반론보도)

공공기관 간부가 자신의 배우자를 해당 기관에 채용하여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이 있다는 보도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공공기관 간부인 A가 자신의 배우자 B를 채용, 근무하게 한 사실이 밝혀져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어났다.

A는 200만 원 정도의 낮은 기본 급여 때문에 응시자가 없어 자신의 배우자에게 사정해 채용하였다고 해명했으나,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B에게 지급된 평균 급여는 268만여 원으로 확인됐다. 또 구체적으로 기본급과 수당 지급 사실을 밝혔던 지난해 직원 모집 공고와 달리, B를 채용할 당시 시급 12,000원이라고만 공고한 것은 다른 응시자의 지원을 막고 B를 채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추측된다.

이 외에도 B는 6월부터 12월까지 평균 3.2일을 결근했는데 8월에는 6일이나 결근하기도 했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배우자 B가 담당했던 업무는 지역 농특산물 매장을 관리하는 것인데 낮은 급여와 주말에 출근하고 주중에 쉬어야 하는 근무 여건으로 해당 직무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 채용 공고에도 지원자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보도한 B의 평균 급여는 전체 근무 기간(2023년 4월 ~ 2024년 2월)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급여가 높았던 특정 시기를 선택해 평균 급여액을 산출했으므로 잘못되었으며, 채용 공고별로 급여 액수와 같은 안내 사항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근무지 및 업무 영역의 차이를 비롯하여 비정규직, 단기 일용직 등 채용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B가 채용됐던 판매사원직의 경우 채용공고가 4회 이루어졌고 공고사항에는 시급 12,000원으로 표시하거나 별도 급여 표시를 하지 않았는데, 이는 일용직에 대해서는 기본급 표시가 곤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B가 타 매장으로 파견되어 근무했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라고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원 근무지에 출근체크가 안 됐다는 사실만을 들어 B가 결근했다고 보도했다고 반박했다.

신청인은 해당 보도로 인해 지자체 공무원, 협동조합장 등 업무 관련자들과의 업무 협조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등 피해가 막심하다며 정정보도와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직접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도했으며, 신청인이 취재에 비협조적인 상황에서 단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등 나름의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부는 신청인의 주장과 제출자료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 배우자의 급여와 기간 산정 부분은 정정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신청인이 취재에 비협조적이었던라도 보도에서 반론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추후에도 반론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피신청인은 중재부 조언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고, 중재부는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함께 게재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피신청인이 유튜브 영상 콘텐츠로 뉴스를 보도해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정 및 반론보도를 새 영상으로도 게재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전략] ○○○○ ○○○○ ○○○○○ ○○본부 본부장인 A 씨가 지난해 7월부터 자신의 배우자인 B 씨를 해당 기관에 채용, 근무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라는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논란이 일자 본부장 A 씨는 “기본 급여가 2,060,740원으로 특혜 채용이 아니라 낮은 급여 때문에 응시자가 없어 자신의 배우자에게 사정해 채용한 ‘사정 채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배우자 B 씨에게 지급된 급여는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평균 2,680,000여 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 ○○○○○본부는 두 차례에 걸친 직원 모집 공고에서는 기본급 2,500,580원과 2,350,580원을 비롯해 각종 수당이 있음을 밝혔지만 배우자 채용 당시에는 시급 12,000원이라고만 공고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다른 응시자의 지원을 막고 자신의 배우자 채용을 위해 제대로 된 급여 내용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추측되는 부분입니다.

이외에도, 채용된 배우자는 근무도 불성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평균 3.2일 결근하였고 심지어 8월에는 6일이나 결근하기도 했습니다. **[후략]**

제6장

동영상 플랫폼 조치 사례

조정성립사항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정정 및 반론보도] ‘○○○○○○○○○○본부 본부장 배우자 채용’ 관련

본문내용: 본지는 2024년 8월 14일 <○○○○ ○○○○○본부 ‘이해충돌방지법’ 논란 - 본부장 “배우자에게 사정해 채용” 황당한 해명> 제하의 기사에서, 본부장의 배우자 채용과 관련하여 “낮은 급여 때문에 응시자가 없었다”는 본부장의 해명과 달리 평균 268만여 원이 배우자에게 지급되었고, 채용 공고 당시 시급만 표기하는 등 제대로 된 급여 내용을 밝히지 않아 다른 응시자의 지원을 막은 것으로 추측된다고 보도하는가 하면, 배우자가 짚은 결근으로 근무도 불성실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부장의 배우자는 실제 총 9개월간 근무하면서 각종 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평균 21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아울러 해당 본부장은 “기본급이 표시된 공고는 ‘본부 사무직원’과 ‘△△△카페 매니저’를 모집하기 위한 것으로, 배우자를 채용한 ‘□□□□□□□□□□ 판매사원’은 비정규직 및 단기 일용직에 해당하여 업무 영역이 전혀 다르기에 비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배우자의 근무 불성실 역시 △△△카페 파견근무와 연차 사용 등을 결근으로 오인한 부분이다”라는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동영상 플랫폼 조치 포함)

- 피신청인은 <◇◇◇◇방송> ◇◇◇◇뉴스면에 24시간 동안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뉴스목록 1페이지에 해당 기사가 나타나게 하며, 제목과 본문은 <◇◇◇◇방송>의 통상적인 기사의 형태에 따른다. 24시간 게재 이후에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방송> 홈페이지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게 한다.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가 <◇◇◇◇방송> 홈페이지에서 검색되는 한,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되, 원 조정대상보도와 구별될 수 있도록 볼드, 음영, 박스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게재한다.
- ※ 본 사건의 경우 합의사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신청인이 ‘통상적인 기사의 형태’에 따라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피신청인이 유튜브를 통해 뉴스 보도를 이어왔으므로, 정정 및 반론보도가 동영상 콘텐츠로도 제작 및 게재되었다.

동영상 플랫폼 조치 사례 03 2024광주조정84/85 각 정정청구

신청인 유형	조합
피신청인 매체유형	방송, 방송사닷컴(인터넷뉴스서비스)
처리결과	조정성립(반론보도, 동영상 플랫폼 조치)

아파트 지역주택조합이 설치를 추진한 커뮤니티 시설이 부실 시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 설계 변경 내역을 통보하지도 않아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보도와 관련, 지역방송 동영상 플랫폼의 뉴스콘텐츠뿐만 아니라 본사 동영상 플랫폼의 뉴스콘텐츠에 대한 조치도 함께 이루어진 사례

보도내용

A 아파트 지역주택조합이 조경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커뮤니티 시설 ‘티하우스’는 설치에 2억여 원이 소모되었음에도 수도시설이 없고 테이블과 의자 몇 개가 전부인 수준이다. 그밖에 인공산과 연못 등 조경시설은 설계 도면보다 면적이 줄었고, 수경시설 바닥은 방수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하 주차장 누수의 원인이 됐다. 조합은 긴급공사라는 이유로 공개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업체 선정 방식을 변경했으며, 준공 시 지급해야 하는 잔금을 미리 지급하기도 했다. 한편,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자체에 변경 내용을 통보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도 확인되어 논란은 확산할 전망이다.

신청이유

신청인 조합은 입주민들이 편하게 와서 즐길 수 있는 티하우스는 건축물이 아닌 조경시설로서 대체로 상하수도 시설이 없다며 이를 설치하게 되면 부가적인 행정절차 및 운영경비 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바, 예비 입주자 대표와 협의를 거쳐 수도 설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조경시설은 당초 설계된 형태에서 타원형으로 변경되었을 뿐 면적이 축소되지는 않았고, 지하 주차장 누수 현상은 수경시설 바닥 방수의 문제가 아닌, 조경시설 관련 전기 배관의 문제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고 그에 대한 보완 조치를 신속히 완료했다고 주장했다.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는 지역주택조합원 및 입주예정자협의회 대표로 구성된 조경사업 안전 심의위원회를 통해 저가 입찰자로 결정하기로 의결한바, 입찰절차과정에서 최저금액으로 입찰한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 잔금을 미리 지급했다는 보도에 대해 상호 계약에 따라 ‘잔금의 일부’를 지급한 것인데 마치 잔금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시청자가 오해할 수 있게 한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02
주요 언론조정사례 - 제6장 동영상 플랫폼 조치 사례

신청인 조합이 사업 변경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미한 변경은 중간 통보가 아닌 준공 시 일괄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사전에 시청 담당과에 확인하고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절차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한 차례 전화가 왔으나 사정상 취재에 응하지 못해 다시 취재 요청이 올 것이라 예상했으나 재취재는 없었고, 관련자에게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제보자가 조합원 자격이 없음에도 해당 자격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도한 것은 피신청인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매체별로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주자 대표를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의사를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심의위원회 결정에 문제가 제기되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개최되기도 한 만큼 업체 선정이 정당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피신청인은 '지자체에 사업 변경 사항 미통보'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이 허가 대상인지 준공 후 통보 대상인지는 쟁점이 아니고 조합이 지자체에 '사업 변경 내용'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미 지자체 조사팀도 '경미한 변경이지만 통보 절차 이행이 필요'하다고 조합에 공식 통보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수 조합원들은 티하우스에 수도시설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시공업체 선정 방식에 대한 설명과 안내가 부족해 조합원들의 불만이 높았으며, 시설물의 규격 축소 시공 및 지하 주차장 누수 문제와 관련해서도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조합원이 주장하는 바에도 차이가 있다고 했다.

조정 심리 과정에서 반론을 취재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과 달리 피신청인은 조합장과 통화하고 관련 논란에 대해 취재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조합장이 공식 인터뷰 형식을 거절해 기자 멘트 형식으로 조합의 입장을 처리하기로 서로 협의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중재부는 보도 내용의 사실관계가 잘못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신청인의 입장이 충실히 반영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을 짚은 후 신청인의 주장을 충분히 실을 수 있는 반론보도를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해당 보도가 전국 방송으로 송출된 점을 감안해 지역방송의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본사 유튜브 채널에도 반론보도가 게시되도록 조치할 것도 제안했다. 이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앵커]

요즘 아파트마다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들이 있죠. ○○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도 최근 6억 원을 들여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었는데 부실 공사 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중략]**

[김△△ 기자]

000여 세대 규모의 ○○읍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입니다. 단지 사이 컨테이너 크기의 작은 건물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 지어진 ‘티하우스’입니다.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필수인데 이마저도 없습니다.” 차를 마시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인데 정작 내부에는 테이블과 의자 몇 개가 전부입니다. 수전도 없는 이 시설을 짓는 데 2억 원이 들었습니다.

[인터뷰: 김□□/조합원]

“커피를 마시려면 수도시설도 돼 있어야 하고 하수시설도 돼야 하는데, 그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김△△ 기자]

돌을 쌓아 만든 작은 인공산과 연못 등 조경시설은 설계 도면보다 면적이 40% 이상 축소됐습니다. 바닥 방수공사도 제대로 안 돼 지하주차장에 누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휴게공간과 조경시설 등 커뮤니티 특화사업에 들어간 조합비는 6억 3천8백만 원.

주민들은 공사업체와 함께 관리, 감독을 맡은 지역주택조합에도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긴급공사라는 이유로 공개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바뀌었고, 준공 시 지급하기로 한 잔금이 미리 지급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조합원]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이 시설물이나 ‘티하우스’ 같은 게 들어왔기 때문에...”

[김△△ 기자]

공사를 맡은 업체는 설계대로 시공했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공사 업체 관계자(XX월 XX일 주민설명회)]

“(조합원) 집에서 커피 타다 먹으라고요?”

“(공사업체 관계자) 아, 그거는 전기 부분하고 수전 부분하고, 소방 부분은 전체 계약에 포함이 안 된 것으로...”

[김△△ 기자]

조합은 뒤늦은 수습에 나섰습니다.

주민들이 지적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업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잔금을 선지급한 건 물품 납부 계약일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특화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자체에 변경 내용을 통보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도 확인돼 논란은 더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략]**

제6장

동영상 플랫폼 조치 사례

조정성립사항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반론보도문]

본문내용: 2024. 9. 18. <물 없는 아파트 '티 하우스'...6억짜리 편의시설 논란> 보도에 대해 해당 아파트지역주택조합은 티 하우스의 경우 운영경비 추가 부담 문제 등으로 수도시설 없이 설치하기로 협의했던 것이고, 조합이 추진한 조정시설공사는 지자체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여 추후 변경된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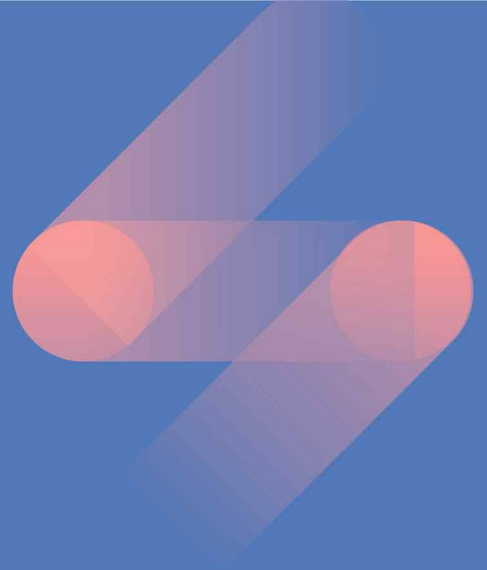
- ◇◇◇◇◇-TV <☆☆☆☆☆> 프로그램에서 반론보도문을 방송한다. 단, 진행자의 멘트는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며,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 방송사 홈페이지 뉴스면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통상의 기사제목 및 본문과 동일한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되도록 하고,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해당 보도문이 검색되도록 한다. 또한, ◇◇◇◇◇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각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되, 상자, 음영, 볼드 처리 등의 방법으로 원보도와 구분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이 네이버, 다음 등 계약에 의해 이 사건 각 조정대상보도를 공급한 경우,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조치사항을 전송한다.

동영상 플랫폼 조치

- <◇◇◇◇◇ ▽▽▽▽▽>(지역방송)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이 사건 각 조정대상보도의 더보기 설명란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한다.
- <◎◎◎◎◎>(본사)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를 삭제한다.

2024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



02

제 2 부

주요 언론조정사례

제7장 기각 및 각하 사례

기각 및 각하 사례

기각 및 각하 사례 01 2024서울조정1203·1204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기각

과거 정정보도로 조정성립되었던 사건에 관해 원 기사를 총괄했던 보도책임자가 해당 정정보도가 잘못되었다며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를 개별적 연관성 없음을 이유로 기각한 사례

보도내용

[정정보도] 'A 정당 B 의원' 관련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본지는 과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의원 B 씨가 ○○ △구의 공공기관인 □□□□을 유흥주점처럼 사용하고, ◇◇산 캠핑장 역시 사유지처럼 활용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보도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과 일부 사실에 기반한 거짓 보도로 확인되어 해당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점과 잘못된 정보를 접한 시민 등에 깊은 사과를 드리며, 유튜브 채널이 복구되는 즉시 해당 영상은 삭제할 예정입니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과거 피신청인 언론사에 소속되어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정정보도)의 대상인 원 기사의 보도책임자로 활동하였던바,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취재기자가 퇴사한 후 원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신청 건이 접수되자 원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었음에도 정정보도를 이행하여 진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은, 원 기사는 국회의원 B가 공공시설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으로서 취재기자가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했던 것인데, 피신청인이 B 의원의 총선 공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려고 정정보도를 이행했다고 주장하며 잘못된 피신청인의 정정보도로 말미암아 신청인과 취재기자, 그리고 취재에 협조한 정보원과 시민 및 구의원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로 인식되는 등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면서 정정보도와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원 기사의 취재기자 역시 이전에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를 대상으로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신청인이 조정기일에 2회 연속 불출석하여 취하간주로 종결된 바 있음

조정결과

중재부는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에 신청인과 관련한 정보가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 기사가

거짓으로 확인되었다는 취지의 조정대상보도에서 신청인을 지목하거나 추지할 수 있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신청인이 원 기사의 보도 책임자였다는 사정만으로 조정대상보도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 조정대상보도에서 신청인이 문제로 삼은 부분과 개별적 연관성을 갖는 자는 원 기사를 취재한 기자에 가까워 보인다는 점 등을 들어 신청인에 대한 개별적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자’로 볼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정대상보도

[정정보도] ‘A 정당 B 의원’ 관련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 ☆☆☆-YouTube〉에서 2023. 8. 29.에 방송한 【230829】 [○○판 ▽▽술자리] 「◎의 술친구 ‘◁◁◁’ B 의원의 엽기 술판 ○○ △구청 ‘공공 룸싸롱’의 의혹 집중 추적」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해당 보도에서 ○○ △구의 공공기관인 □□□□□을 룸싸롱처럼 사용한 것처럼 보도하고, ◇◇산 캠핑장 역시 사유지처럼 활용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지역의 뜬 소문과 확인되지 않은 일부 사실만으로 마치 B 의원이 ○○ △구청장 시절 공공기관의 건물을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하고 술집처럼 활용하였다는 식의 거짓보도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보도로 인해 B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 시민들과 △구민들에게 잘못된 내용을 전한 것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영상등은 계정이 복구되는대로 즉각 삭제할 예정입니다.

기각 및 각하 사례 02 2024서울조정2243·2244 추후·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각하

민사소송 승소 결과를 근거로 한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해 법적 요건 결여를 이유로 각하결정한 사례

보도내용

○○시의회 △△△△△위원회 소속인 A 의원은 정례 회의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은 임차인대표 선정 과정 및 주민의 공유공간 사유화로 인해 갈등이 격화된 B 임대아파트의 사례를 들어, 임대주택 관리 규약에 대한 허점을 지적하고 약자의 구제 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A 의원은 B 아파트에서 일어난 갈등의 핵심이 “임차인 대표회의에서 범위를 벗어난 행위”와 “투명하지 못한 선거 운영 방식과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A 의원은 이러한 문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 임대주택 대표자 선거의 투명성·공정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피력하면서,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시행할 시 일반 분양단지와 마찬가지로 해당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선거사무를 위임하는 표준관리규약 개정을 제안했다.

또 대표자의 권력 분산과 견제를 위해 동별 대표자를 정원제가 아닌 필수 3인의 공동대표로 구성하고 총회장 1인을 선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보도에서 다루어진 ‘B 아파트 사례’의 갈등 당사자(前 B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장)로, A 의원의 발언은 신청인을 비방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피신청인 보도로 인해 주택도시공사는 신청인이 7년간 사용한 임차인대표 사무실에서 퇴거하도록 하는 법적 절차를 집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에 대해 집중 감사를 벌이는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청인과 임차인대표자의 자리를 다투고 있는 자들은 피신청인 보도를 이용해 신청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본안 소송(선거무효 확인의 소)을 제기하였으나, 신청인이 모두 승소하였다고 강조했다.

피신청인 보도로 인해 신청인은 다년간 사용하던 임차인대표 사무실에서 퇴거하게 됐고 아파트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건물인도 소송도 당하게 돼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며 신청인의 대표자 지위에 관한 소송에서 신청인이 모두 승소한 만큼 이에 대한 추후보도와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이 사건 신청인은 보도에서 묘사된 갈등과 관련된 민사소송 승소 결과를 근거로 추후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추후보도청구에 관한 언론중재법 제17조 제1항은 “언론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라고 추후보도청구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중재부는 이 사건이 추후보도청구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했는데,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의하여 범죄 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가 아니고, 대표자 선출을 둘러싼 당사자 간의 민사소송에서 승소 결과를 근거로 추후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기 때문에 법적 요건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다.

※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언론보도가 있는 후 6개월 이내)을 준용함에 따라 조정신청 기간 도과로 각하

조정대상보도

○○시의회 △△△△△위원회 A 의원은 제000회 정례회 0차 시정질문을 통해 □□ ◇◇동의 B 아파트의 갈등 사례를 들며 전반적인 임대주택 관리규약에 대한 허점을 지적하고, 약자들의 구제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다. **[중략]**

하지만, “최초 아파트가 건립 이후 84년이 지나도록 주택관리에 대한 별도의 법 제정이 없었으며, 특히 아파트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 문화는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경향이 있다.”고 A 의원은 강하게 꼬집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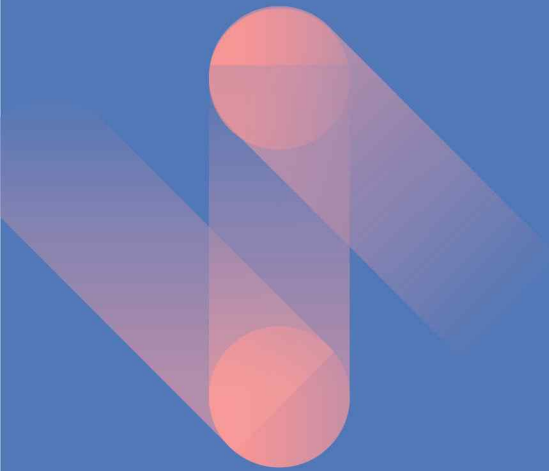
특히, □□ ◇◇동에 위치한 B 아파트의 갈등 사례를 예로 들며, 규정을 지키지 않은 임차인대표 선정 과정 및 주민의 공유공간 사유화 과정에서 불거진 불신이 격화된 내용을 자세히 공유했다. A 의원은, “이번 갈등의 핵심이 되는 사항은 임차인 대표회의에서 범위를 벗어난 행위와 투명하지 못한 선거 운영 방식과 과정.”에 있다고 보고, 잘못을 따지기보다 제도를 정비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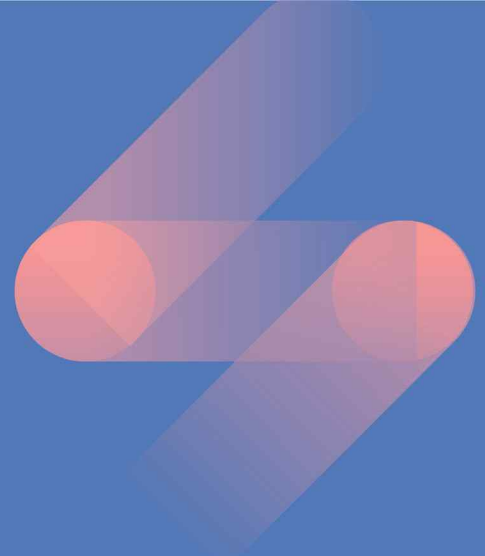
우선, “임대주택 동별 대표자·총회장 선거 절차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로 선거사무를 일반 분양단지과 같이 위임할 수 있도록 표준관리규약 개정하자.”고 A 의원은 제안했다. **[후략]**

2024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

02





제 2 부

주요 언론조정사례

제8장 기타 사례

기타 사례

기타 사례 01 2024서울조정2364·2365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정정보도, 열람차단, 기타)

사건 담당 경찰관이 참고인에게 출석을 강요해 논란이라는 보도와 관련, 취재기자가 출석 요구를 받은 참고인 중 한 명이었음에도 그 사실을 감추고 보도한 점을 고려하여 정정보도와 열람차단 및 경찰관에 대한 접촉, 후속보도를 금지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경찰서 팀장이 사건과 무관한 사람을 상대로 공권력 남용과 강압수사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팀장 A 씨는 모 카페에서 시간제로 근무한 직원이 국민연금 체납을 이유로 신청한 진정의 참고인 조사를 위해, 해당 카페의 본사 대표직을 맡았던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출석을 강요했다. 그 후 진정 건과 B 씨가 무관하다는 사실을 알리려 한 C 씨에게도 출석을 강요했다.

A 씨가 B 씨 등에게 출석을 강요한 당일은 진정서가 접수된 지 4개월이 흐른 시점이었기에 수사 청탁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A 씨는 C 씨가 ‘국민연금 체납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냐’며 죄목에 대해 따져 문자 말을 돌리는가 하면, ‘혐의가 있어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혐의점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출석을 요청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C 씨가 출석이 아닌 근무지 직접 조사를 요청하자 동의했다가 철회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 C 씨는 A 씨가 본인과 B 씨를 피의자로 확정하고 대한 것이라 주장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사유가 존재할 경우, 전화진술 등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출석이나 진술을 강제할 수 없음에도 A 씨는 조사를 강요한 것이다.

신청이유

신청인(○○○○경찰서 A팀장)은 적법절차에 따라 진정인 및 관련자 진술 청취 등을 통해 자료를 검토한 후 사업주 B에게 출석을 요구했던 것이며, B가 대표자였기에 단순한 참고인 신분이 아니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사건 경위를 청취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신청인은 C로부터 사업장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는 진술을 듣고 업무상 횡령과 국민연금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어 C도 출석하여 참고인 진술을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는데, C는

자신이 기자라면서 참고인 신분인데도 출석을 강요한 것은 문제라며 이를 기사로 공론화하겠다고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청인은, 피신청인 기자 C가 자신에 관한 사안을 마치 다른 사람의 사건인 양 보도하였고, 보도 내용 또한 심각하게 왜곡하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진정서 접수로부터 참고인 출석 요구까지 4개월이 걸린 점에 대해 수사청탁 의혹이 있다고 보도된 것과 관련, 신청인은 입건 전 절차에 따라 성실히 조사하느라 시간이 소요된 것일 뿐 청탁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신청인은 정당한 공무수행에 부당한 요소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한 피신청인에 대해 정정보도와 함께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이미 사임한 전 대표 B를 피의자로 단정한 점, 사건 배당 주체인 팀장이 담당 수사관이라는 점, 한 차례 조사 이후 반복 수사가 이루어진 점 등을 지적하며 참고인 신분은 출석이 의무가 아님에도 공권력을 이용해 강압적으로 조사하려 해 사건을 공론화하고자 한 것이라 주장했다. 다만 조정절차가 개시된 후 원만한 해결을 위해 내부 논의를 거쳐 조정대상보도가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했다고 밝혔다.

중재부는 진정서가 접수되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경찰공무원의 당연한 업무인데 그 수사진행 절차에 불만을 보이며 비협조적이었다는 것과 해당 사건에서 직접적 이해당사자로 보이는 자신의 사건을 마치 제3자의 사건인 양 보도하면서 경찰공무원을 압박하는 행위는 문제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피신청인은 연락 당시 신청인의 태도가 부적절했으며,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취재할 때 민원인으로 접근하여 사건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중재부는 취재기자가 민원인을 사칭해 취재하는 것은 바람직한 취재 관행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지상파 기자들이 민원인을 사칭해 중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피신청인의 보도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정한 보도로 보기 어렵다며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피신청인은 중재부의 의견을 존중해 신청인과 피해구제 조치에 대해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신청인은 명예회복을 위해 반드시 정정보도가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보도가 이행된다면 손해배상은 포기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중재부는 노출이 차단된 조정대상보도를 완전히 삭제한 후 정정보도하고 향후 신청인에 대한 연락 및 후속보도를 금지하는 조정안을 제시했고, 이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제8장

기타 사례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조정성립사항

정정보도문

보도제목: [정정보도] <[단독] ○○○○췁 팀장, 현행법 무시 ‘참고인 출석’ 강요…비협조에 “업무횡령죄 적용” 협박> 관련

본문내용: 본지는 지난 7월 9일자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단독] ○○○○췁 팀장, 현행법 무시 ‘참고인 출석’ 강요…비협조에 “업무횡령죄 적용” 협박>이라는 제목으로 ○○○○경찰서 A가 사건과 무관한 제3자를 상대로 공권력 남용과 강압수사를 했다는 주장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해당 수사관은 ‘사건과 무관한 제3자를 상대로 출석을 강요한 사실’이나 ‘사건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건 전 조사 절차를 진행하였고,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기사 속 ‘C 씨’ 본인임에도 알리지 않고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 섹션에 정정보도문 제목을 게재 시점부터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이후에도 해당 보도문을 기사 DB에 보관하여 홈페이지에서 열람·검색되도록 한다.
- 네이버, 다음 등 계약에 의해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조치사항을 전송한다.

열람차단

-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가 더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열람차단한다.
- 네이버, 다음 등 계약에 의해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가 더 이상 열람되지 않도록 요청한다.

기타(신청인 접촉 및 후속보도 금지 합의)

-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 외 다른 내용으로도 신청인에게 연락하거나 신청인 관련 후속보도를 하지 않는다.

기타 사례 02 2024서울조정2263·2264, 2024서울조정2265·2266
각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일반기업체 및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일간신문,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반론보도, 피신청인 사과/유감표명, 기타)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한 모 화가의 작품에 위작 논란이 있고, 국립현대미술관이 해당 작가의 작품을 상업적 전시회에 대여한 것은 규정 위반이라는 보도와 관련, 반론보도와 피신청인 사과, 향후 반론권 보장을 골자로 조정 성립된 사례

보도내용

①·② 최근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한 작품 중 ○○○(1912~1979)이 그린 작품 ‘△△△’이 위작으로 의심된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근대미술품 수집가인 제보자 K 씨는 2023년 Y 화랑에서 열린 근대화가 ○○○의 작품전에 출품된 ‘△△△’과 1937년 선전 입선작 도록에 수록된 ‘△△△’에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K 씨는 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과 도록의 ‘△△△’을 대조한 결과, 여러 부분에서 확연한 차이를 발견하였다고 밝혔다. 또 K 씨는 “단순한 위작이 아니라 매우 허술하게 위조되었다.”며, 국립현대미술관이 이 작품을 1985년부터 소장해 왔으면서 어떻게 도록과 비교조차 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표명했다.

③·④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이었던 A는 임명된 지 3~4개월 만에 ○○○의 전시를 연 바 있다. 그러나 그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립현대미술관에 대한 특정감사에서 위법·부당업무 처리가 적발되어 사의를 표명했다. A 전 관장의 사임 석 달 후 Y 화랑에서 ○○○ 전시가 시작됐다. 당시 Y 화랑은 ○○○의 자녀 B 씨의 소장품을 바탕으로 100점 이상의 그림을 전시하면서, 이 중 4점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대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무료 전시였지만 Y 화랑은 상업갤러리이므로 작품 한두 점을 판매하였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됐다. A 전 관장의 허가 하에 작품들이 대여된 것으로 보이는데, 국립현대미술관 규정에 따르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전시에는 작품을 대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신청이유

○○○ 화백의 아들인 신청인2.(B)는 국립현대미술관에 작품을 기증한 1985년에는 선친의 작품이 대중에 알려지지 않았고 미술학계 및 평단의 평가와 평론이 부재했기에 작품을 위조할 이유가 전혀 없었으며 다만 개인 소장에 따른 멸실 우려가 있어 국가가 영구 보존해 주기를 희망해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위작 논란과 관련해서는 1985년 작품 기증 과정에서 도록 비교 및 진품 감정 등 평가

02
 주요 언론조정사례 - 제8장 기타 사례

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밝혔다.

신청인1.(Y 화랑)은 전시 작품 대여 규정 위반 논란 등에 대해 A 관장의 사퇴 이후 내부 심의를 거쳐 반출된 사안이며, 신청인1.이 국립현대미술관에 작품 대여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작품 기증자인 신청인2.가 국립현대미술관과 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대여받았던 것이고, 신청인1. 화랑에서 해당 작품을 전시하면서 작품 판매가 이루어진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신청인1. 및 신청인2.는 피신청인과 사전 협의를 통해 상호 간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했으나 피신청인이 오히려 추가 보도를 예고하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여왔기에, 신청인들의 정당한 권리 확보를 위하여 피신청인 언론사별로 각 조정대상보도에 해당하는 정정보도문 2건 게재와 5,000만 원(신청인별 2,5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국립현대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으로서 소장품에 대한 부실관리 등에 대해서는 언론의 감시대상이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도 충분히 보도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했으며, 후속기사도 보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피신청인은 해당 보도 후 국립현대미술관의 요청을 받고 반론을 추가하고 당사자들에 대해 익명 처리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3차례 심리 과정에서 신청인 측은 피신청인이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아 문제가 야기됐음을 짚으며 합의 조건으로 반론보도 외에 피신청인의 사과를 추가하고자 했다. 피신청인이 난색을 표명하자 중재부는 양측이 사전에 조율한 조치사항만 합의서에 포함하고 사과 부분을 심리석상에서 구두로 유감 표명하는 수준으로 정리하자고 권유하였다. 양 당사자는 중재부의 권유를 받아들여 사전 협의해 온 내용을 토대로, 반론보도를 이행 및 향후 보도 시 반론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①·② **[전략]** 최근 국현이 소장한 작품 가운데 ○○○(1912~1979)이 그린 1937년 작 ‘△△△’이 위작으로 의심된다는 제보가 본지로 접수됐다. **[중략]**

제보자인 K씨는 근대미술품 수집가로 지난해 7월 XX일부터 9월 XX일까지 두 달간 서울 강남구 Y화랑에서 열린 근대화가 ○○○의 작품전에 출품된 ‘△△△’과 1937년 제16회 선전 입선작 도록(중앙도서관 소장)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K씨는 이 작품이 국현에서 대여해 온 소장품인 것을 알고는 국현 홈페이지의 ‘소장품’(미술은행이 아닌) 카테고리에서 게시된 ‘△△△’과 도록의 ‘△△△’를 대조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중략]**

결과는 놀라웠다. 분석 결과 두 그림은 눈매가 완전히 달랐고 얼굴형에도 차이가 있었다. 도록 속

소녀는 광대뼈가 도드라진 것에 비해 국현 것은 광대뼈 없이 매끄러운 얼굴형이었다. 더 분명한 것은 소녀의 왼쪽 눈초리가 도록은 페이스라인에 닿아 있는 반면 국현 소장품은 얼굴 안에 쑥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다.

귀밑머리와 옷깃에서도 확연한 차이가 드러났으며 벨트 장식에 있어 도록의 것은 직사각형인 것에 반해 국현의 것은 사다리꼴에 가깝다는 것이다. 벨트 장식의 두께가 다른 것은 물론이다. 그밖에 머리핀 장식과 머리카락 끝부분의 차이도 두드러졌다.

“단순한 위작이 아니라 매우 허술하게 위조된 작품이었다. 숨은그림찾기를 해도 될 정도였다.” **[중략]** 그가 가장 개탄해 마지않는 것은 국현이 이 작품을 1985년부터 소장해 오면서 어떻게 도록과 비교한 번 안 했는가 하는 것이었다.

심지어 국현은 작품을 입수하던 1985년 ○○○ 전을 개최했다(○○○의 첫 전시회는 1984년 A의 기획 아래 서울 롯데미술관에서 한 차례 열린 바 있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꼽히고 있다. 월북 예술가 해금 조치가 이루어진 게 88올림픽이 열리던 1988년 7월의 일이기 때문이다. **[후략]**

③·④ **[전략]** A는 문재인정부 때인 2019년 2월 국립현대미술관(국현) 관장에 임명됐다. **[중략]** 공교롭게도 그가 임명된 지 3~4개월 후인 2019년 5월 30일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전관에서 ‘근대미술가의 재발견 1 절필시대’전이 열리고 이때 다시 한번 ○○○ 등의 작품이 전시된다. **[중략]** A가 국현 관장에 임명되자마자 ○○○ 전시를 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자. **[중략]**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립현대미술관에 대한 특검감사에서 16건의 위법·부당 업무 처리가 적발되면서 작년 2023년 4월 사의를 표명했다.

그리고 같은 해인 2023년 7월 Y화랑에서 ○○○ 전시가 시작됐다. 그가 사임한 지 불과 석 달 후의 일이다. 당시 Y화랑은 120~130점이나 되는 작품을 대대적으로 공개하면서 전부 1930~1950년대 ○○○이 그린 작품이라고 했다. Y화랑 측은 본지와와 통화에서 대부분 둘째 아들 B의 소장품을 바탕으로 한 전시였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가운데 4점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대여해 온 것이라고 했다. 4점은 위작 논란에 휩싸인 ‘△△△’을 비롯해 ‘□□□’ ‘◇◇◇’ ‘☆☆☆☆’이다.

그 밖의 외부 대여는 없었다고 했다. 무료 전시였지만 Y화랑은 상업갤러리이므로 당연히 작품 판매가 이루어졌다. 당시 판매된 ○○○ 화백의 작품은 한두 점에 불과하다는 게 Y화랑 측의 주장이었다. **[중략]**

상업갤러리에 소장품 불법 대여한 국현

그렇다면 공공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이 상업갤러리인 Y화랑에 △△△ 등 소장품 4점을 대여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걸까? **[중략]**

누가 승인했든 적법하기만 하면 되는 일 아닌가. 그런데 그게 적법하지 않다는 게 문제다. 국립현대미술관 규정집 4절 제36조(소장작품의 대여) ②항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전시에는 작품을 대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Y화랑 측은 2023년 7월 XX일 ~ 9월 XX일 개최된 ‘○○○ 전’에서 “한두 점이 판매됐다”고 본지에 밝혔다(기사가 나간 후 화랑 대표가 본사를 방문하여 전시회가 끝난 후에 판매된 것이라고 정정 요구를 해왔다). **[후략]**

조정성립사항

반론보도문 ①

보도제목: [반론보도] <[단독]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위작 의혹 ① 도록과 다른 그림> 보도 등 관련

본문내용: 본 신문은 2024. 7. 7.자 문화면에 <단독-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위작 의혹 ① 도록과 다른 그림> 제하의 기사에서 ○○○이 그린 1937년 작 ‘△△△’ 작품의 도록 사진과 실제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을 비교해 보았을 때 위조된 작품으로 확인되고, 국립현대미술관이 한 번도 도록과 비교해보지 않았다는 제보자의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Y화랑 및 ○○○ 화백의 둘째 아들 B 씨는 “도록과 실물 그림과의 비교 과정에서 인식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해당 작품은 위작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반론보도문 ②

보도제목: [반론보도] <[단독]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위작 의혹 ② 국현 소장품 대여 적법했나> 보도 등 관련

본문내용: 본 신문은 2024. 7. 8. 자 문화면에 <단독-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위작 의혹 ② 국현 소장품 대여 적법했나> 제하의 기사에서 전 국립현대미술관장 A 관장의 사의표명 석 달 후에 Y화랑 ○○○ 전시가 시작됐고, Y화랑에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품을 불법적으로 대여받아 작품을 판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Y화랑 및 ○○○ 화백의 둘째 아들 B 씨는 “전시작품 대여는 A 전 관장의 사퇴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Y화랑 전시 중에는 작품 판매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작품 대여는 Y화랑이 아닌 기증자 B 와 국립현대미술관의 협의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반론보도문 ①과 반론보도문 ② 제목을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문화면 상단에 최초 게재 시점부터 24시간 동안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각 반론보도문 본문이 나타나도록 한다. 본문의 활자 및 크기는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하게 함 24시간 후에도 기사 DB에 보관하여 계속 검색되도록 한다.
- 반론보도문 ①의 본문을 조정대상보도 ②의 하단에, 반론보도문 ②의 본문을 조정대상보도 ④의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고 계속 확인되도록 한다. 활자 및 크기는 조정대상보도의 본문과 동일하게 하며 박스 처리, 음영 처리 등으로 구분되도록 한다.
- 네이버,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를 공급한 각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도 조치사항을 전송한다.

기타(반론권 보장)

- 피신청인들은 신청인들의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은 보도를 일체 중지하고, 향후 신청인들에 대한 기사를 보도할 경우 반드시 입장을 청취하여 보도한다.

기타 사례 03 2024제주조정23 정정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유튜브 채널
처리결과	조정성립(동영상 플랫폼 조치, 기타)

공항 보안검색 직원의 미흡한 대응으로 반려동물이 놀라 주인이 큰 부상을 입었다는 보도와 관련, 기사를 제보하고 촬영에 동의한 신청인이 악성 댓글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게 되어 유튜브에 전제한 보도와 쇼츠(Shorts)를 삭제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A 공항에서 보안 검색 중 고양이가 주인을 공격하여 심한 부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주인 측에 따르면 보안검색 직원이 케이지에서 고양이를 꺼내 목줄을 풀어달라 요구했고, 놀란 고양이가 주인의 품에서 벗어나면서 검색장 일대에 소동이 빚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항은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반려동물은 규정에 따라 케이지에 넣고 엑스레이 장비를 통과시키거나 주인이 안고 이동해야 하는데, 주인이 안고 가길 원했으며 목줄에서 금속 반응이 있어 위해 물품 또는 폭발물 검사를 위해 빼 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신청이유

고양이 주인인 신청인은 아르바이트생이 보안검색대에서 근무하여 안내가 미흡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 사나운 반려동물로 인해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보도되었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은, 목줄을 풀어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당시 폭발물 검사 관련 안내가 없었고 공항 측 인터뷰는 현장에 있던 사람이 아닌 책임자의 답변일 뿐이라면서 공항 측의 인터뷰는 실제 상황과 다르다고 밝혔다. 아울러 뉴스 영상에 나온 고양이 목줄 사진은 신청인이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서 삭제되기를 희망했다.

신청인은 해당 영상이 동물을 혐오하고 확대하는 정보가 오가는 사이트에 공유되고 자신의 신상까지 밝혀져 인신공격성 악성 댓글이 달리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며 관련 영상을 삭제하도록 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현행 언론중재법에는 기사삭제 청구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이 사건 신청인은 보도문 게재보다 기사삭제가 되기를 원함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취재는 신청인의 제보로 시작된 것으로 신청인이 해당 사진도 직접 제공했고 인터뷰에도 적극적으로 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항 보안검색 책임자의 인터뷰는 사실관계

확인 및 공항 측의 반론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했다고 반박했다.

신청인은 제보하고 인터뷰에 응하는 등 보도에 동의했지만 유튜브 채널에도 해당 콘텐츠가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실명 보도에 대해 동의를 받았음에도 익명 처리를 요청받은 후 바로 모자이크 처리 및 음성변조 조치를 하였고 유튜브 채널과 방송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영상들도 모두 교체했다고 밝혔다.

중재부는 제보의 취지와 다르게 보도 내용이 자극적으로 다루어진 측면이 있고, 신청인의 동의 범위를 벗어난 수준에서 영상이 게시된 것으로 보이므로 지역 및 본사의 각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뉴스 영상과 관련 쇼츠에서 신청인의 신체와 고양이, 고양이 목줄 사진을 삭제하고 신청인이 피신청인 소속 담당 기자에게 사과하는 내용을 담은 조정안을 권고했다.

양 당사자는 중재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앵커] [중략]

최근 고양이를 데리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다 주인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리포트] [중략]

키우던 고양이를 데리고 A 공항 보안 검색을 받다가 고양이가 물고 할퀴 겁니다.

**은 보안검색 요원이 안고 있던 고양이 목줄을 강제로 풀게 하는 등 대응이 미흡해 고양이가 놀랐고, 자신도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전화 인터뷰 : 고양이 주인]

“애초에 처음부터 목줄같은 것도 다 검색해야 한다고 말을 해주든지 아니면 애초에 처음부터 뭐 이런 방사능이나 이런 게 안전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저는 그쪽으로 그냥 넣어서 케이지(가방)에서 안 꺼냈을 거예요.”

고양이 난동 사건이 난 건 지난달 XX일. ○○에서 △△으로 이사를 가며 데리고 가던 고양이가 보안검색 과정에서 놀란 겁니다. [중략]

하지만 A 공항은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반려동물의 경우 규정에 따라 가방 안에 넣고 엑스레이 장비를 통과시키거나 주인이 안고 이동해야 하는데, **이 안고 가길 원했다는 겁니다. 또, 고양이 목줄에서 금속 반응이 나와 목줄 검사를 하려 했고, 목줄을 빼 줄 것을 요청만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화 인터뷰 : B 씨 / □□□□공사 ○○공항 ◇◇◇◇부장]

“해당 목줄은 위해 물품이나 폭발물을 숨길 가능성이 있는 물품이기에 제거 후 대인검색대를 통과해달라고 안내드렸으며 목줄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후략]

조정성립사항

동영상 플랫폼 조치 (열람차단)

- 피신청인은 ○○☆☆☆-YouTube 채널에 업로드한 <보안검색대 통과하다 다쳐...반려동물 어떻게?> 제목의 ○○☆☆☆-TV 뉴스 영상 및 이와 관련된 <▽▽▽▽> 쇼츠 영상에서 신청인의 신체 모습, 신청인의 고양이 사진 및 고양이 목줄 사진을 삭제한다.
- 피신청인 본사가 ☆☆☆-YouTube 채널에 게재한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와 동일한 내용의 뉴스 영상 및 유튜브 쇼츠 영상에도 조치사항이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한다.

기타 (신청인 사과)

- 신청인은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피신청인 소속 담당 기자에게 전화를 통해 사과한다.